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

2025. 6.

교 육 부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 요구 사항	6
(1)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 미준수(기관주의, 시정, 통보) ...	6
(2) 등록금 반환 대상인 제적 학생에게 등록금 미반환(기관주의, 시정, 통보)	12
(3) 하부조직(과 및 담당관) 과다 설치·운영(기관경고, 통보)	19
(4)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기관경고, 통보)	22
(5) 조교 복무 미처리 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주의)	25
(6) 대학원 지도교수의 채용 심사위원 참여 및 신고 미이행(경고, 통보)	27
(7) 징계기준 비위유형 오적용 및 부당 징계의결 건 재심사 미청구(징계, 기관경고, 통보)	33
(8) 연구교원 임용 단독심사 합격자 결정 등 심사절차 부적절(경고, 주의, 통보)	35
(9) 조교 임용 면접시험 미실시 등 채용절차 부적절(기관경고, 경고, 주의)	42
(10) 직원 및 조교의 겸직 미허가 연구과제 참여(기관주의, 통보)	47
(11) ◀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미비(개선)	56
(12)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적정 수령(기관경고, 통보, 시정)	68

(13)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집행 및 피복비 지급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75
(14) 미활용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81
(15) 게스트하우스 운영 예산 낭비 및 목적 외 사용[기관경고, 통보(시정완료)]	84
(16)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출납부 작성 누락(기관주의)	92
(17) 연구소 유지관리 및 검증 용역 업체 기성 대금 과다 청구(시정, 통보)	96
(18) 유지보수 업체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간 무상 제공 범위를 벗어난 국유재산 사용(기관경고, 통보)	99
(1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안내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104
(20) 간접비 납부 대상인 ㄷ제작비를 간접비 납부 대상이 아닌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 간접비 과소 납부 등 연구비 집행 절차 위반[징계, 시정, 통보(2)] ..	110
(21) 간접비 지출 권한이 없는 단과대학의 집행 부적정(기관경고, 시정, 통보)	121
(22) 법인카드 포인트의 회계별 세입 처리 부적정(기관주의, 통보)	131
(23) 출장 여비 중복·초과 지급(기관경고, 시정, 통보)	135
(24) 가설 건축물 설치 시 관할청 미협의(기관경고, 통보)	144
(25)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점검 기록 관리 소홀(경고, 주의, 통보)	147
(26) 물품 구매 시 자체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부적정(통보)	150
IV. 현지조치 사항	15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전북대학교는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전북대학교의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전북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3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전북대학교의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재산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0. 1.부터 2023. 12.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전북대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23. 11. 20.부터 12. 1.까지, 2023. 12. 4.부터 12. 6.까지 2회에 걸쳐 13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는 2023. 12. 1. 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하고, 2024. 3. 4.(1차), 2024. 4. 5.(2차), 2024. 5. 8.(3차), 2024. 5. 28.(4차)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11. 28.(1차), 2024. 12. 3.(2차), 2024. 12. 12.(3차)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1)

1. 주요 연혁

전북대학교는 1947년 독립 이리농과대학으로부터 시작하여 1951년 국립 전북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환되었고, 2008년 익산대학과 통합하였다.

2. 학생 현황

전북대학교는 [표 1]과 같이 2022. 12. 31. 기준 전체 재학생 수는 대학 16,620명, 대학원 3,623명, 합계 20,243명이다.

[표 1] 전북대학교 학생 현황

(단위: 명)

입학정원	대학		입학정원	대학원		입학정원	합계	
	현원			현원			현원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학생	재학생
3,848	22,697	16,620	1,691	4,060	3,623	5,539	26,757	20,243

3. 교직원 현황

전북대학교는 [표 2]와 같이 2022. 12. 31. 기준 교원 수는 2,866명이고, 직원 수는 676명이다.

[표 2] 전북대학교 교직원 현황

(단위: 명)

총장	교원				직원				합계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조교	소계	일반직	연구직	대학 회계직	소계	
1	1,047	1,637	181	2,866	311	12	353	676	3,542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4. 예산 현황

전북대학교의 예산은 [표 3]과 같이 2022년 571,664백만 원에서 2023년 593,283백만 원으로 21,619백만 원(3.78%) 증가하였다.

[표 3] 전북대학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비율)
대학회계	292,489	313,100	20,611(7.05)
▲	255,135	254,236	-899(-0.35)
발전기금	24,040	25,947	1,907(7.93)
합계	571,664	593,283	21,619(3.78)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전북대학교	-	1명* (1건)	10명** (10건)	11명 (11건)	22명 (22건)	· 기관경고 13건 · 기관주의 5건 · 통보 22건 · 통보(시정완료) 1건 · 개선 1건 【합계 42건】	· 시정(회수) 6건, 429,209,358원 · 시정(반환) 1건, 102,756,520원 【합계 7건】	-

* 퇴직불문 1명 제외 / ** 퇴직불문 3명 제외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인사 분야

- ① (조직) 「국립학교 설치령」을 위반하여 하부조직(과·담당관) 과다 설치·운영
 - 기준(11개)을 초과하여 하부 과·담당관 조직·운영(18개)
- ② (인사) 징계 양정 부당 감경, 우리부에 재심사 미청구

(나) 채용 분야

- ① (채용) 연구교원·조교 임용 시 회피·제척 위반 등 절차 부당
 - 친분 관계가 있는 교수가 신고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교수 개인이 단독 심사 후 합격자 결정, 채용 시 면접시험 미실시 등

(다) 예산·회계·연구비 분야

- ① (연구비) 간접비 과소 계상, 중앙구매 미준수 등 집행 부당
 - 간접비({연구비-부가세-위탁연구개발비}*20%), ㄷ제작비(간접비 부과 대상)를 위탁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 간접비 과소 납부(305백만 원)

- 기기 구입(5백만 원 초과) 등은 ▲에 중앙구매를 요청해야 하나 수차례(101건) 미이행, 대학 시설(●실) 무단 사용(179회, 사용료 미납)

이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총장에게 법령상 징계기준을 벗어난 징계를 의결하고 재심사 청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총장 보고요청을 묵살한 관련자 및 ● 관련 용역과제 연구재료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비 중앙구매 절차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하는 한편 과소 납부한 간접비 시정 등 총 2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2. 처분 요구 사항: 26건[붙임 참조]

교 육 부

기관주의·시정·통보

제 목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 미준수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전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학교 및 외부장학금 관리,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근로 및 교육조교 장학생 관리,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은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국제학술교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비유학생 선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장학금 지급 연한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장학금은 각 학칙에서 정한 수업 연한 이내의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 학칙」 제38조에 따르면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학(Ⓚ, Ⓛ 등)은 6년으로 정하고 있다.

나. 교육조교 장학금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7조 및 제21조, 「전북대학교 교육조교 장학생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교육조교 장학금의 경우, 운영책임자(담당과(팀)장)가 장학생의 근무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²⁾ 서면으로 익월 3일까지 ○(□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교비 유학 장학금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교비 유학 장학금의 경우, 자격은 졸업예정자 또는 전북대 출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선발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하여 AR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가 교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하는 수업연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했어야 하고, 교육조교를 운영하는 부서는 장학생 근무 관계 특이사항을 ○(□)에 제출했어야 하며, 교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하여 AR에서 선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장학금 지급 연한 초과자 대상 장학금 오지급

그런데 전북대학교 ○(□)은 [표 1]과 같이 2020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업연한 4년을 초과한 학생 3명의 수업연한을 확인하지 않고 총 1,152천 원의 장학금을 잘못 지급하였다.

2) 그 외 경우는 교육조교 장학생이 복무기관장(부속기관장)과 체결한 복무협약서(월 30시간, 6개월 근무)를 근거로 매월 장학금 지급

[표 1] 수업연한 초과자 대상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월	학과	학번	성명	학년	연한학기 (등록학기)	장학금명	지급액 (천 원)	비고
1	2020	1	8	-	-	-	4	8 (9)	-	384	학부
2	2022	2	8	-	-	-	4	8 (9)	-	384	학부
3	2022	2	8	-	-	-	4	8 (9)	-	384	학부
계										1,152	

나. 근무하지 않은 교육조교 대상 장학금 오지급

한편, 전북대학교 ♡은 [표 2]와 같이 2021학년도 1학기에 교육조교장학생 2명이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 사항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팀)에도 제출하지 않아 총 1,080천 원의 장학금을 잘못 지급하게 하였다.

[표 2] 근무 사실이 없는 교육조교장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월	성명	소속 (학과)	복무 기관장	운영 책임자	근무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장학금 지급 여부	지급액 (천 원)	비고
1	2021	1	07	-	-	♡장	♡ ³⁾ 실무팀장	X	O	270	근무사실 없음
2	2021	1	07	-	-			X	O	270	
3	2021	1	08	-	-			X	O	270	
4	2021	1	08	-	-			X	O	270	
계										1,080	

3) 「전북대학교 학칙」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 산하의 주요 부속기관 중 하나

다. 교비 유학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 미준수

또한, 전북대학교 △(▷)은 [표 3]과 같이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매년 5명씩 총 20명의 교비유학생(1명당 8백만 원 ~ 12백만 원 지원)을 선발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여 AR에서 선발하지 않고, 자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 않고 위촉한 심사위원이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표 3] 교비유학생 선발 현황

(단위: 명, 천 원)

연번	학년도	선발 인원	1인당 지원금액	예산액	인문계·자연계 구분 여부	AR 주관 선발 여부	선발 방법	비고
1	2020	5	8,000	40,000	×	×	계획 수립 후 공고 → 심사위원(3명) 위촉 후 선발	
2	2021	5	12,000	60,000	×	×	상동	
3	2022	5	12,000	60,000	×	×	상동	
4	2023	5	12,000	60,000	×	×	상동	
계				220,00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수업연한 초과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 오지급 관련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 전에 장학 총괄 부서가 더욱 세밀한 검토를 통해 규정에 위반되는 장학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학금 지급 재학 연한 초과 안내 문구와 함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입력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에서 별도로 추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근무하지 않은 교육조교에게 장학금 오지급 관련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장학금 지급 단계에서 잘못 지급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조교 장학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학금 지급 전 장학생 근무 내역 재점검 등 관련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학금 지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교비 유학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 미준수 관련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에서 교비 유학 장학생을 자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AR에서 선발하지 않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온 것은 소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결과였다며 향후 자체 규정을 준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계획 수립 및 공고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위촉된 심사위원 전원이 AR 위원에 해당되는 점, 감사기간 동안 교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과정 검토 결과 별도의 공정성 훼손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 ♥ 및 △(▷)가 교내 장학금 지급 및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기관주의)
- ② 수업연한 초과자에게 잘못 지급된 장학금 1,152천 원과 근무하지 않은 교육조교 장학생에게 잘못 지급된 장학금 1,080천 원은 회수 조치하며, (시정)
- ③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교내 장학금 지급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비 유학 장학생 선발 관련 재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시정·통보

제 목 등록금 반환 대상인 제적 학생에게 등록금 미반환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학생 등록금 수납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표]와 같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학적변동 기준일)에 의해 산정 (예: 미복학 제적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일 기준)

또한, 그 해당 사유로 △법령에 따라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학칙」 제103조 제2항에서도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별표]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학생 대상 등록금 미반환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총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등록금 총 102,756,520원(기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153,064,65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학생 중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등록금을 반환하고, 향후 반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대상자별로 등록금 반환 규정 및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겠으며, 단과대학 및 학과에도 관련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등록금 반환 업무 진행 시 반환사유별로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주의하고, **(기관주의)**
- ② 제적 학생 80명에게 미반환된 등록금 102,756,520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며, **(시정)**
- ③ 반환사유별 등록금 반환 현황을 재점검하여 미반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반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신청 정보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등록금 반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학생 대상 등록금 미반환 현황

연 번	대상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일(사유) 및 미반환 금액			금액
	학과	학번	성명	납부 학기	납부 일시	납부 금액 (원)	학적 변동	학적 변동 일시	제적일	사유	금액 (원)	산정근거
1	-	-	-	2018/2	-	2,298,000	-	-	-	미복학	1,914,990	-
2	-	-	-	2020/1	-	2,298,000	-	-	-	미복학	1,149,000	-
3	-	-	-	2015/2	-	2,297,000	-	-	-	미복학	1,531,330	-
4	-	-	-	2020/2	-	1,692,000	-	-	-	미복학	846,000	-
5	-	-	-	2020/1	-	2,298,000	-	-	-	미복학	1,149,000	-
6	-	-	-	2017/1	-	2,298,000	-	-	-	미복학	1,149,000	-
7	-	-	-	2014/2	-	2,299,000	-	-	-	미복학	1,532,660	-
8	-	-	-	2019/1	-	2,298,000	-	-	-	미복학	1,914,990	-
9	-	-	-	2019/2	-	2,298,000	-	-	-	미복학	1,149,000	-
10	-	-	-	2018/2	-	1,888,000	-	-	-	미복학	1,258,660	-
11	-	-	-	2020/2	-	100,000	-	-	-	미복학	83,330	-
12	-	-	-	2018/2	-	2,298,000	-	-	-	미복학	1,149,000	-
13	-	-	-	2020/2	-	2,102,000	-	-	-	미복학	1,051,000	-
14	-	-	-	2018/1	-	2,134,000	-	-	-	미복학	1,778,330	-
15	-	-	-	2018/2	-	1,661,000	-	-	-	미복학	1,107,330	-
16	-	-	-	2020/1	-	1,991,500	-	-	-	미복학	995,750	-
17	-	-	-	2019/1	-	1,661,000	-	-	-	미복학	1,107,330	-

연 번	대상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일(사유) 및 미반환 금액			금액
	학과	학번	성명	납부 학기	납부 일시	납부 금액 (원)	학적 변동	학적 변동 일시	제적일	사유	금액 (원)	산정근거
18	-	-	-	2018/1	-	1,286,000	-	-	-	미복학	643,000	-
19	-	-	-	2019/1	-	1,661,000	-	-	-	미복학	1,107,330	-
20	-	-	-	2017/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21	-	-	-	2017/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22	-	-	-	2021/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23	-	-	-	2019/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24	-	-	-	2019/1	-	2,366,000	-	-	-	미복학	1,577,330	-
25	-	-	-	2019/1	-	2,366,000	-	-	-	미복학	1,971,660	-
26	-	-	-	2019/1	-	462,000	-	-	-	미복학	381,000	-
27	-	-	-	2018/2	-	2,134,000	-	-	-	미복학	1,067,000	-
28	-	-	-	2017/1	-	2,134,000	-	-	-	미복학	1,779,160	-
29	-	-	-	2021/2	-	1,067,000	-	-	-	미복학	533,500	-
30	-	-	-	2019/2	-	2,134,000	-	-	-	미복학	1,067,000	-
31	-	-	-	2021/2	-	2,134,000	-	-	-	미복학	1,067,000	-
32	-	-	-	2021/1	-	711,330	-	-	-	미복학	355,660	-
33	-	-	-	2014/2	-	1,287,000	-	-	-	미복학	1,072,500	-
34	-	-	-	2021/1	-	2,134,000	-	-	-	미복학	1,422,660	-
35	-	-	-	2021/1	-	1,938,000	-	-	-	미복학	1,292,000	-
36	-	-	-	2015/2	-	1,749,000	-	-	-	미복학	1,457,500	-
37	-	-	-	2020/1	-	384,000	-	-	-	미복학	320,000	-
38	-	-	-	2017/1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39	-	-	-	2016/2	-	2,135,000	-	-	-	미복학	1,779,160	-

연 번	대상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일(사유) 및 미반환 금액			금액
	학과	학번	성명	납부 학기	납부 일시	납부 금액 (원)	학적 변동	학적 변동 일시	제적일	사유	금액 (원)	산정근거
40	-	-	-	2019/2	-	2,134,000	-	-	-	미복학	1,778,330	-
41	-	-	-	2021/2	-	630,500	-	-	-	미복학	525,410	-
42	-	-	-	2019/2	-	2,134,000	-	-	-	미복학	1,778,330	-
43	-	-	-	2015/2	-	1,749,000	-	-	-	미복학	1,166,000	-
44	-	-	-	2018/1	-	2,134,000	-	-	-	미복학	1,778,330	-
45	-	-	-	2022/1	-	2,134,000	-	-	-	미복학	1,422,660	-
46	-	-	-	2021/2	-	355,670	-	-	-	미복학	177,830	-
47	-	-	-	2017/2	-	1,661,000	-	-	-	미복학	1,384,160	-
48	-	-	-	2019/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49	-	-	-	2019/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50	-	-	-	2018/2	-	1,661,000	-	-	-	미복학	830,500	-
51	-	-	-	2021/1	-	1,661,000	-	-	-	미복학	1,384,160	-
52	-	-	-	2019/2	-	1,661,000	-	-	-	미복학	1,107,330	-
53	-	-	-	2017/1	-	1,306,000	-	-	-	미복학	1,088,330	-
54	-	-	-	2019/1	-	1,661,000	-	-	-	미복학	1,107,330	-
55	-	-	-	2017/2	-	2,134,000	-	-	-	미복학	1,067,000	-
56	-	-	-	2018/1	-	2,134,000	-	-	-	미복학	1,422,660	-
57	-	-	-	2020/1	-	1,991,500	-	-	-	미복학	1,991,500	-
58	-	-	-	2022/2	-	1,661,000	-	-	-	미복학	1,107,330	-
59	-	-	-	2020/2	-	1,494,900	-	-	-	미복학	747,450	-
60	-	-	-	2019/2	-	1,415,750	-	-	-	미복학	707,870	-
61	-	-	-	2018/1	-	2,326,500	-	-	-	미복학	1,790,410	-

연 번	대상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일(사유) 및 미반환 금액			금액
	학과	학번	성명	납부 학기	납부 일시	납부 금액 (원)	학적 변동	학적 변동 일시	제적일	사유	금액 (원)	산정근거
62	-	-	-	2018/1	-	2,326,500	-	-	-	미복학	1,790,410	-
63	-	-	-	2021/1	-	2,860,000	-	-	-	미복학	2,383,330	-
64	-	-	-	2020/2	-	2,737,000	-	-	-	미복학	2,132,500	-
65	-	-	-	2018/2	-	2,148,500	-	-	-	미복학	1,074,250	-
66	-	-	-	2019/2	-	2,737,000	-	-	-	미복학	2,132,500	-
67	-	-	-	2021/2	-	1,381,250	-	-	-	미복학	1,076,870	-
68	-	-	-	2019/2	-	3,123,000	-	-	-	미복학	3,123,000	-
69	-	-	-	2021/1	-	2,208,000	-	-	-	미복학	1,840,000	-
70	-	-	-	2018/1	-	3,263,000	-	-	-	미복학	2,570,820	-
71	-	-	-	2019/1	-	3,229,500	-	-	-	미복학	2,034,330	-
72	-	-	-	2018/1	-	3,085,000	-	-	-	미복학	2,056,660	-
73	-	-	-	2020/1	-	2,831,500	-	-	-	미복학	2,359,580	-
74	-	-	-	2019/2	-	1,283,500	-	-	-	미복학	1,069,580	-
75	-	-	-	2020/2	-	1,829,000	-	-	-	미복학	1,159,990	-
76	-	-	-	2019/2	-	2,365,000	-	-	-	미복학	1,093,500	-
77	-	-	-	2021/2	-	1,541,250	-	-	-	미복학	770,620	-
78	-	-	-	2019/2	-	1,770,000	-	-	-	미복학	1,475,000	-
79	-	-	-	2021/1	-	2,281,000	-	-	-	미복학	1,475,000	-
80	-	-	-	2019/2	-	2,404,000	-	-	-	미복학	1,202,000	-
계						153,064,650					102,756,520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하부조직(과 및 담당관) 과다 설치·운영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학칙」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10개 처·국, 18개 과·부 등을 두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 설치령」과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르면 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전북대: 11개)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부조직에 11개 과 및 담당관을 두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학칙」 제9조 및 제10조에는 2023.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별표 6>에서 정한 과 및 담당관 기준(11개)을 7개 초과하여 18개 과 및 담당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표] 전북대학교 하부조직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

설치단위	기준 (A)	운영 현황 (B)	과부족 (C=B-A)	비고
처·실· 본부·단	학칙 (전북대: 10개)	10	-	-처, -처, -처, -국, -처, -처, -처, -처, -처, -처
과· 담당관	11	18	7	-과, -과, -과, -과, -부, -과, -과, -과, -부, -부, -부, -과, -부, -부, -부, -과, -부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령상 ‘과’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부’를 제외하였고,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조직 개편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개혁 지원 등을 위해 과 및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위임하거나, 각 대학의 의견수렴 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설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향후 조직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당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여 하부조직을 설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4에서 매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 기관 등4)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된 교직원 등은 이를 이수하여야 했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포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별표]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교직원 4,882명(중복 포함)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대학 본부 차원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⁵⁾를 도입 하였으나, 제도적 보완(강화)이 필요하여 일부 교직원 및 신규 임용 교직원의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향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미이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보완(강화)·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5)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 필수 자격요건, 전임교원 교수 업적평가, 비전임교원 및 조교 재임용 등에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반영

[별표]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교육 대상 인원 (A)	오프라인 교육 횟수	교육 이수 인원* (B)	교육 미이수 인원 (C=A-B)
교원	2020	2,577 (428)	94 (40)	1,146 (160)	1,431 (268)
	2021	2,112 (329)	36 (8)	1,112 (127)	1,000 (202)
	2022	2,190 (735)	24 (4)	905 (250)	1,285 (485)
소계		6,879 (1,492)	154 (52)	3,163 (537)	3,716 (955)
직원	2020	1,074 (160)	110 (51)	807 (117)	267 (43)
	2021	930 (156)	41 (10)	733 (92)	197 (64)
	2022	1,465 (315)	21 (5)	763 (125)	702 (190)
소계		3,469 (631)	172 (66)	2,303 (334)	1,166 (297)
합계		10,348 (2,123)	326 (118)	5,466 (871)	4,882 (1,252)

*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이수 인원내 포함

※ ()는 신규 임용 교직원

교 육 부

주의

제 목	조교 복무 미처리 대학원 학위과정 수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등에 따라 조교⁶⁾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는 개인별 법정 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하여야 했다.

6)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A는 2023학년도 1학기 동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허가권자(학과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ㄱ(2023학년도 1학기)’ 교과목 총 12시간을 수강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A가 2023. 3. 신규 임용되어 복무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등을 위반하여 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대학원 학위 과정을 수강한 A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 육 부

경고·통보

제 목 대학원 지도교수의 채용 심사위원 참여 및 신고 미이행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조교 신규 채용 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전형(1차)과 면접시험(2차)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장이 결정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행동강령(2018. 12. 24. ~ 2022. 1. 13. 시행)」 제2조 및 제5조7),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2. 1. 5. 시행)」 제9조8)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시행)」부터 해당 조문 삭제

8)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2. 6. 13. 시행)」부터 해당 조문 삭제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 5. 19. 시행)」 제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및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평가·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 밖에 본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의미하고,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에서 조교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B 등 7명은 [별표] “조교 신규 채용 현황”과 같이 2020. 3. 부터 2023. 3.까지 조교 7명을 채용하면서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이자 전공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여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제자가 지원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무관련자”임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B 등 7명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신고 없이 조교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대학원 지도교수가 조교 채용 심사에 참여할 경우 서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는 지도교수가 직무관련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교 채용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지도교수가 직무관련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인지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전북대학교 교직원의 행동기준인 「전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 되는 자로서 시험·평가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조교 채용 시 채용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조교 채용 시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자”임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련자(7명)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경고)

② 관련 규정 개정 및 안내 등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조교 신규 채용 현황

연번	신규 채용 조교				이해 관계자 여부	서류전형 위원			면접시험 위원			대학원 학위 강의내역	비고 (지원자 현황)
	성명	단과 대학명	학과명	신규 채용일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1	C	-	-	-	O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B	-	-	B	○ - ○ - ○ -	○ C ○ -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2	-	-	-	-	O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O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연번	신규 채용 조교				이해 관계자 여부	서류전형 위원			면접시험 위원			대학원 학위 강의내역	비고 (자원자 현황)
	성명	단과 대학명	학과명	신규 채용일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4	-	-	-	-	○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해당없음	
5	-	-	-	-	○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6	-	-	-	-	○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7	-	-	-	-	○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부

징계·기관경고·통보

제 목	징계기준 비위유형 오적용 및 부당 징계의결 건 재심사 미청구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이하 “전북대 징계위원회”, 위원장 ◇)를 두고,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공무원법(2022. 7. 21.)」 제50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공무원 징계령(2022. 9. 13.)」 제15조, 제15조의2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0.)」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정도나 평소 행실, 누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했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법령상 징계기준을 벗어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 재심사 청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G 보고요청을 묵살하여 부당한 징계가 확정되도록 한 E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징계, 퇴직으로 불문)**
- ② 대학 자체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징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하게 징계가 의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기관경고)**
- ③ 향후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여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부당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경고·주의·통보

제 목 연구교원 임용 단독심사 합격자 결정 등 심사절차 부적절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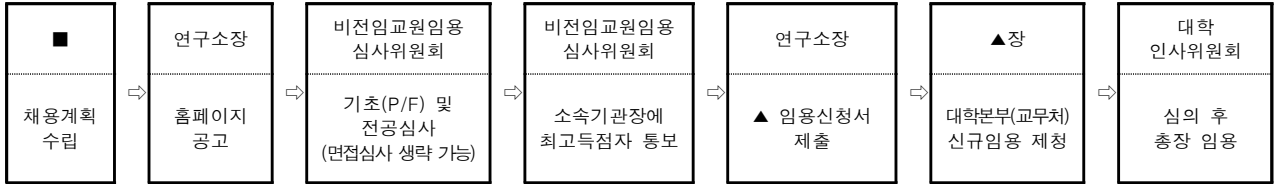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학칙」, 「전북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부설 일반연구소로 ☆ (이하 “연구소”)를 두고 있고 [표 1]과 같이 산하에 8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 산하 연구실 현황

☆							
-	-	-	-	-	-	-	-

그리고, 연구소는 「전북대학교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북대학교 연구교원 임용규정」 등에 따라 산하 연구실에서 전임교원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연구교원을 [표 2]의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표 2] 연구소 연구교원 채용 절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북대학교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2021. 1. 26.)」 제1조, 제2조, 제37조에 따르면 연구교원은 비전임 기타교원 중 하나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하고, 「전북대학교 연구교원 임용규정(2021. 12. 3.)」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구교원은 전북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서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연구에 종사할 자를 말하며, 임용 신청부서에서 공개 채용을 거쳐 임용 신청기관장이 추천한 자를 ▲장의 제청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교원을 임용하는 세부적인 절차는 「전북대학교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지침(2020. 11. 19.)」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에 따르면 부서장은 학기 단위로 학과별 채용분야(과목) 및 인원, 비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부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부)의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과(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8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고 기초심사(서류, P/F)는 지원자의 실무적 경험, 현장실습 지도 및 공동 연구와의 연관성을, 전공심사(서류)는 지원자의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연구능력 등을 평정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모집분야별 기초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중 전공심사, 면접심사, 가점을 포함하여 최고득점자 1인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2021. 11. 30.)」 제19조 및 제20조, 「전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20. 7. 6.)」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교직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직무관련자는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연구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소관부서(■)에서 비전임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심사(P/F)와 전공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지원자와 직무관련으로 인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에서 공고한 연구교원 채용절차를 살펴본 결과,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소 내 ● 책임 운영자인 J는 [표 3]과 같이 ● 연구교원(조교수)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임용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적법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J 단독으로 응시자의 지원서류를 접수 및 심사하고 합격자를 선정하여 최종 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3] 2022년 전북대 ☆(●) 연구교원 채용 현황

채용계획 수립	공고 현황			지원자	심사 현황				임용예정자 ▲ 추천	▲ 제청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	임용 대상자		
	접수기간	채용인원	선발방법		심사위 구성	기초 심사	전공 심사	면접 심사				계약일자	성명	임용기간
×	-	1명	서류전형	1명 (K)	×	×	×	× (생략 가능)	-	-	-	-	K	2년

그 결과, 연구소 연구교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임용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였다.

관련 경과를 살펴보면 J는 L에게 본인의 연구년 파견 동안 ●을 관리하고 과제를 수행할 연구교수 채용에 대해 구두로 협의하여 허락을 득한 후 ■ 담당자 M에게는 본인의 이메일 및 문의번호가 기재된 채용 공고문을 전달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은 연구교원 채용 공고문을 교내 채용 공고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J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유일한 지원자이자 본인의 ◇◇인 K의 서류를 접수하여 학력(25점), 학위성적(25점), 연구실적(25점), 경력(25점) 총 100점의 심사항목을 정하고 박사학위 취득(2021. 8.) 후 경력이 1년 미만을 이유로 경력만 20점을, 다른 항목은 25점 만점을 부여하여 총 95점으로 K를 임용예정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J는 같은 날 M에게 우선으로 합격자 성명, 임용기간을 통보하면서 ▲으로 보낼 임용신청서 제출 걸공문을 기안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발송하게 하였고, 공문의 붙임 관련 서류는 본인이 직접 ▲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 제청과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서면심의)를 거쳐 K는 임용기간 2년으로 임용되었다.

또한, J는 본인의 ◇◇인 K가 「전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상 본인과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무관련자임에도 본인의 연구소 연구교원으로 임용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다.9)

J의 문답 및 소명서에 따르면 연구교원 채용은 ■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 담당자 M이 업무가 과중해 보이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추진하였다고 한다. 임용할 연구교원은 업무내용(연구) 및 대우(급여)가 ♡♡ 때와 큰 차이가 없어 그 연장선 정도로 K를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였다고 하며, 지나고 보니 당시 채용에 대한 상세한 이해는 부족하였고 착오도 있었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M의 문답 및 경위서에 따르면 M은 연구소에서 연구교원 임용수요가 있는 경우 ■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P/F) 및 전공심사를 통해 임용 예정자를 추천하는 등 일련의 채용절차를 주관하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소관업무라는 인식이 없었고 관련 규정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단지 해당 교수의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원 채용이라는 생각에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의 직속 상급자인 N의 문답에 따르면, N도 M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연구교원 채용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소장 L도 문답에 따르면, J 교수가 구두로 연구교원 채용 얘길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채용 관련 규정은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9) 「전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3.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파.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교직원은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구소 업무 담당자인 M이 2022. 1.부터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M은 연구교원과 ♡♡은 연구과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구과제 책임자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연구소 업무 담당자인 M이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생긴 일이라고만 답변하였는데, M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연구교원 채용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당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한 잘못은 당연히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용을 주도한 J는 M으로부터 공고를 해야 한다고 고지 받았고, 직접 ▲에 문의하여 절차상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는 등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는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으면서 관련 채용규정을 잘 몰라 단순히 ♡♡과 별반 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절차에서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업무 담당자가 바빠보여 도와주기 위해 단독으로 지원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하였다는 진술은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본인의 ◇◇인 연구소 ♡♡을 가장 책임자로 염두에 두고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도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 대학 교원을 심사하여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용 절차에 흠결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임용부서를 통해 채용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원서 접수와 심사절차를 권한 없이 진행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의 ◇◇가 임용되도록 한 J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경고)
- ② 소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부당한 채용절차를 방치한 M, N과 부설연구소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L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며, (주의)
- ③ 향후 연구교원 등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채용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경고·주의

제 목	조교 임용 면접시험 미 실시 등 채용절차 부적절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는 근무기간 1년으로 임용하고 재임용할 수 있으며 조교의 소속 대학장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하되, 채용절차는 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및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조교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하며 조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조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학과장은 접수기간 3일 이상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채용 공고(임용 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하여야 하고,

서류전형(1차)¹⁰과 면접시험(2차)¹¹을 실시하되 두 시험의 결과는 합산하지 않고 각 절차마다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조교 임용방식에 대해 2019. 6. 7.자로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하여 조교의 신규채용 및 재임용을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던 방식에서 공개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학과장이 단과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교내 전 기관에 개정 알림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 각 학과는 조교를 임용할 때 학과장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접수기간 3일 이상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는 2021. 2.과 2021. 10. 두 차례 조교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표]와 같이 조교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를 추진하면서 2일 간의 접수기간만을 부여하였고, 면접시험은 누락한 채 서류전형만을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2021. 10. 채용에서는 서류전형에서 심사점수 평균 60점을 얻어 합격기준을 충족한 ○ 등 3명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채용절차 전반을 잘못 운영한 사실이 있다.

10)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 심사점수 60점 평균 미만자는 합격자에서 제외됨. 심사항목은 가. 자기소개서, 나. 학부성적, 다. 외국어능력, 라. 담당업무와의 관련 경력, 마. 전산 및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1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별 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하여야 한다. 심사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합격자에서 제외됨. 심사항목은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표] 2021년 전북대학교 ▶ 조교 임용 현황

연번	공고 기간 (일수)	채용 인원	응시원서 접수기간	지원자 현황 (응시번호 順)	서류전형 심사위원 (일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順, 합불여부)	면접 시험 실시	최종 합격자
1	'21.2.8.~ '21.2.19. (12일)	1명	'21.2.18.~ '21.2.19. (2일)	V, Q, P, -, -, -, -	-, -, -, - ('21.2.21.)	V(82점, 합격) P(80점, 합격) Q(72점, 합격) -(52점, 불합격) -(50점, 불합격) -(45점, 불합격) -(37점, 불합격)	×	V
2	'21.10.14.~ '21.10.25. (12일)	1명	'21.10.25.~ '21.10.26. (2일)	-, U, W, S, R, O, T	-, -, - ('21.10.27.)	W(75점, 합격) R(70점, 합격) S(65점, 합격) O(60점, 불합격) T(60점, 불합격) U(60점, 불합격) -(45점, 불합격)	×	W

그 결과, 2021. 2. 채용에서 P, Q와 2021. 10. 채용에서 R, S 및 서류전형 합격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합격처리된 O, T, U 등 총 7명은 서류전형에서 심사점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고도 면접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21년 ▶ 조교 채용 당시 2019년 2학기 강사 채용 규정¹²⁾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여 면접심사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2) 「전북대학교 강사임용 규정(2019. 6. 27.)」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는 기초,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개정될 당시 조교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학과에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건에 대해 조교 연수회에서 지적사례를 전파하였고 향후 조교 신규채용 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 답변은 공직자가 업무처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규정의 개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대학교 강사 임용은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교 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서 채용절차와 방법을 별도 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서 2019년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조교 임용방식을 공개채용 절차로 개편하면서 교내 전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규정을 혼동했다거나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전북대학교는 학과 조교를 임용하면서 접수 단계부터 접수기간도 준수하지 않았고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를 3명이나 불합격처리시켰으며 최종 단계인 면접시험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부분이 확인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① 해당 학과(▶)로 하여금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기
바라며, (기관경고)

② 학과 조교를 임용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조교 AS과 AT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경고, 퇴직으로 불문)

③ 학과 조교 임용을 총괄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U, AV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 육 부

기관주의·통보

제 목	직원 및 조교의 겸직 미허가 연구과제 참여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직원의 경우 ▼(총장)가 조교의 경우 ♣(소속기관 장)가 겸직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하며,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 조교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조교가 소속된 대학(원)의 장, 처(본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으로 정의하며, 「같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조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다만, 교내 교원의 연구과제 참여 및 교내 야간강의 담당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의 직원과 조교는 겸직 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직원의 겸직 미허가

전북대학교 X 등 직원 8명은 [별표 1] “겸직 미허가 직원 연구과제 참여 현황”과 같이 2020. 1. 1.부터 2023. 11. 감사일 현재까지 총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13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

나. 조교의 겸직 미허가

전북대학교 Y 등 조교 4명은 [별표 2] “겸직 미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현황”과 같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4개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를 매년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직원의 겸직 관련(연구과제 참여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2021. 12. 29.부터 겸직허가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의 경우 연구활동 및 성과물 도출 등을 주요 업무로 명시하여 채용한 사례가 있으며, 본인의 업무 이외의 연구과제 수행 등은 겸직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 겸직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의 경우 연구과제 참여는 해당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 속한 해당 학과의 ▷▷의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종합감사 실시 후 연구과제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연구과제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고, 겸직 허가 관련 안내 및 주기적인 겸직 허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겸직 허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직원과 조교의 개인별 겸직 미허가 관련 소명 사항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직원의 겸직 미허가 관련 소명 사항

소속	직급	성명	개인별 의견
-	-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 조교의 겸직 미허가 관련 소명 사항

소속	직급	성명	개인별 의견
-	조교	Y	-
-	조교	-	-
-	조교	-	-
-	조교	-	-

② 검토결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직원 본연의 업무와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대한 대학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교직원들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겸직 허가 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관주의)
- ② 향후 겸직 미허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실태조사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겸직 未허가 직원 연구과제 참여 현황

(단위: 천 원)

소속	직급	성명	연도	연구사직일	연구종료일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책임자	인건비	연구수당	능력 성과급
-	-	-	2022	-	-	-	-	-	920,000	-		2,000	
			2023	-	-	-	-	-	150,039	-			
			소계							1,070,039			2,000
-	-	X	2019	-	-	-	-	-	53,000	-		700	
			2020	-	-	-	-	-	286,004	-		1,000	
				-	-	-	-	-	102,571	-		1,400	
			2021	-	-	-	-	-	519,899	-			
				-	-	-	-	-	198,134	-		500	
			소계							1,259,629			5,100
-	-	-	2019	-	-	-	-	-	53,000	-		700	
			2022	-	-	-	-	-	121,216	-			
			2023	-	-	-	-	-	210,564	-			
				-	-	-	-	-	93,000	-			
소계							477,780			700			
-	-	-	2020	-	-	-	-	-	30,000	-		1,600	
				-	-	-	-	-	22,000	-			
				-	-	-	-	-	40,000	-		1,200	
				-	-	-	-	-	35,750	-		600	
				-	-	-	-	-	11,000	-		600	
				-	-	-	-	-	30,000	-		1,400	
				-	-	-	-	-	11,000	-			
				-	-	-	-	-	392,296	-			
				-	-	-	-	-	22,000	-			
				-	-	-	-	-	22,000	-			
				-	-	-	-	-	11,000	-			
				-	-	-	-	-	27,500	-		700	
				-	-	-	-	-	27,500	-		1,000	240
				-	-	-	-	-	7,700	-			
				-	-	-	-	-	11,000	-			
				-	-	-	-	-	19,800	-			
-	-	-	-	-	33,000	-							
-	-	-	-	-	120,000	-		1,800					

소속	직급	성명	연도	연구사직일	연구종료일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책임자	인건비	연구수당	능률 성과급			
-	-	-	2021	-	-	-	-	-	1,000,000	-						
				-	-	-	-	-	72,600	-						
				-	-	-	-	-	-	-	33,000	-		700	480	
				-	-	-	-	-	-	-	11,000	-		400	160	
				-	-	-	-	-	-	-	11,000	-		450	160	
				-	-	-	-	-	-	-	11,000	-				
				-	-	-	-	-	-	-	16,500	-		650	168	
				-	-	-	-	-	-	-	11,000	-		500		
				-	-	-	-	-	-	-	11,000	-				
				-	-	-	-	-	-	-	16,500	-		600	120	
				-	-	-	-	-	-	-	11,000	-				
				-	-	-	-	-	-	-	16,500	-				
				-	-	-	-	-	-	-	330,000	-				1,080
				-	-	-	-	-	-	-	60,000	-		1,300	1,061	
				-	-	-	-	-	-	-	44,000	-				
				-	-	-	-	-	-	-	16,500	-		700	120	
				-	-	-	-	-	-	-	110,000	-				
				-	-	-	-	-	-	-	110,000	-		1,500	800	
				-	-	-	-	-	-	-	33,000	-		1,100	480	
				-	-	-	-	-	-	-	22,000	-		700	320	
-	-	-	-	-	-	-	110,000	-		700	1,600					
-	-	-	-	-	-	-	11,000	-		500	160					
				소계					2,941,146			18,700	6,949			
-	-	-	2020	-	-	-	-	-	545,000	-						
				-	-	-	-	-	392,296	-						
			2021	-	-	-	-	-	-	-	100,000	-				
				-	-	-	-	-	-	-	33,000	-		200		
				-	-	-	-	-	-	-	11,000	-		300		
				-	-	-	-	-	-	-	11,000	-		250		
				-	-	-	-	-	-	-	110,000	-		200		
				-	-	-	-	-	-	-	75,000	-		450		
				-	-	-	-	-	-	-	330,000	-				
				-	-	-	-	-	-	-	60,000	-		700		
				-	-	-	-	-	-	-	44,000	-				
				-	-	-	-	-	-	-	110,000	-				
				-	-	-	-	-	-	-	110,000	-		300		
				-	-	-	-	-	-	-	110,000	-		400		
-	-	-	-	-	-	-	11,000	-		250						

소속	직급	성명	연도	연구사직일	연구종료일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책임자	인건비	연구수당	능력 성과급	
			2022	-	-	-	-	-	55,000	-				
				-	-	-	-	-	83,300	-		400		
				-	-	-	-	-	30,000	-		300		
			2023	-	-	-	-	-	1,029,116	-				
			소계						3,249,712			3,750		
			2019	-	-	-	-	-	1,004,498	-				
			2020	-	-	-	-	-	300,000	-				
				-	-	-	-	-	-	30,000	-		700	
				-	-	-	-	-	-	539,000	-			
				-	-	-	-	-	-	22,000	-			
				-	-	-	-	-	-	35,750	-		650	40
				-	-	-	-	-	-	11,000	-		500	
				-	-	-	-	-	-	16,500	-		400	120
				-	-	-	-	-	-	30,000	-		600	
				-	-	-	-	-	-	11,000	-			
				-	-	-	-	-	-	392,296	-			
				-	-	-	-	-	-	22,000	-			
				-	-	-	-	-	-	22,000	-			
				-	-	-	-	-	-	11,000	-			
				-	-	-	-	-	-	27,500	-		350	
				-	-	-	-	-	-	27,500	-		700	
				-	-	-	-	-	-	7,700	-			
				-	-	-	-	-	-	11,000	-			
			-	-	-	-	-	-	19,800	-				
			-	-	-	-	-	-	11,000	-		800		
			-	-	-	-	-	-	33,000	-				
			-	-	-	-	-	-	120,000	-		800		
			2021	-	-	-	-	-	100,000	-				
				-	-	-	-	-	-	33,000	-		300	
				-	-	-	-	-	-	11,000	-		250	
				-	-	-	-	-	-	11,000	-		250	
				-	-	-	-	-	-	11,000	-			160
				-	-	-	-	-	-	11,000	-			160
				-	-	-	-	-	-	3,300	-			48
				-	-	-	-	-	-	16,500	-		700	48
				-	-	-	-	-	-	11,000	-		600	160
			-	-	-	-	-	-	11,000	-				
			-	-	-	-	-	-	16,500	-		700	48	

소속	직급	성명	연도	연구사직일	연구종료일	연구과제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책임자	인건비	연구수당	능력 성과급
				-	-	-	-	-	11,000	-			
				-	-	-	-	-	11,000	-		800	160
				-	-	-	-	-	16,500	-			120
				-	-	-	-	-	75,000	-		450	
				-	-	-	-	-	330,000	-			
				-	-	-	-	-	60,000	-		900	
				-	-	-	-	-	16,500	-		200	120
				-	-	-	-	-	44,000	-			
				-	-	-	-	-	16,500	-		700	48
				-	-	-	-	-	110,000	-			
				-	-	-	-	-	110,000	-		500	
				-	-	-	-	-	7,700	-			112
				-	-	-	-	-	4,400	-			64
				-	-	-	-	-	33,000	-		450	
				-	-	-	-	-	22,000	-		350	
				-	-	-	-	-	110,000	-		400	
				-	-	-	-	-	11,000	-		250	
			2022	-	-	-	-	-	55,000	-			
			2022	-	-	-	-	-	83,300	-		600	
			2022	-	-	-	-	-	88,000	-			
			2022	-	-	-	-	-	30,000	-		445	
				소계					4,184,744			14,345	1,408
-	-	-	2019	-	-	-	-	-	1,004,498	-		17,100	
			2020	-	-	-	-	-	539,000	-		17,800	3,920
			2020	-	-	-	-	-	40,000	-		400	
			2021	-	-	-	-	-	110,000	-		900	800
			2021	-	-	-	-	-	154,000	-		7,400	2,240
			2021	-	-	-	-	-	165,000	-		4,350	1,200
			2021	-	-	-	-	-	110,000	-		3,150	1,600
			2022	-	-	-	-	-	312,400	-		3,500	
				소계					2,434,898			54,600	9,760
-	-	-	2021	-	-	-	-	-	222,222	-			
			2022	-	-	-	-	-	150,000	-			
			2023	-	-	-	-	-	75,000	-			
				소계					447,222				
합계									16,065,170			99,195	18,293

[별표 2]

겸직 未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현황

(단위: 천 원)

소속	직급	성명	연도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 과제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 책임자	인건비	연구 수당	능력 성과급
-	조교	Y	2021	-	-	-	-	-	310,000	-			
-	조교	-	2022	-	-	-	-	-	20,000	-		276	
-	조교	-	2023	-	-	-	-	-	200,000	-		200	
-	조교	-	2022	-	-	-	-	-	220,000	-			
소계									750,000			476	

교 육 부

개선

제 목 ◀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미비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2023. 11. 30. 기준으로 ◆ 소관 사업단 7개, & 소관 사업단 80개, 합계 87개의 ◀을 설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고, ▲ ◀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계약직원¹³⁾의 채용·보수·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은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별표 1] “2022년도 ◀ 직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22년도에 총 29개 사업단에서 81건의 직원 채용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북대학교 ▲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 ★)은 ⊙ 관련 제·규정 및 지침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13) 기간제 계약직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업비와 기타 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함

또한,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 직원은 사업단장이 채용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채용방법과, 채용은 사업단장이 직원 등이 담당할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 ▲ 직원 인사운영 지침」 제2조부터 제6조에 따르면 ▲ 직원(대체인력, 단기근로자 포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채용방법, 임용 자격 기준,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 3. 23.)”와 같이 2023. 1.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등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은 ◀(87개)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 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준하여 채용방법, 임용 자격 기준,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채용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에는 신규직원 채용 시 채용방법, 자격요건만 명시되어 있고, 심사방법,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은 2022년도에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34건에 대하여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등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은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을 2018. 2. 7.에 제정한 이후로 동 사업단에 대한 직원 채용 실태 점검, 사업단의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의 인력 채용 권한은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관련 지침에 준하여 직원을 채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사업단에서는 채용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규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단 구성부터 인력 채용까지 행정인력 없이 사업단장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되므로 모든 절차를 갖추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 특성상 사업에 맞는 경력자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재공고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잦은 이직으로 빈번한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긴급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 실태 점검, 사업단 인사담당자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전북대학교 ◀ 계약직원 취업규칙」에 직원 채용 관련 세부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사업단과 수시로 소통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의 의견대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이에 우선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장)은

◀에서 계약직원 채용 시 공정한 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별표 1]

2022년도 ◀ 직원 채용 현황

사업단명 (29개)	채용직종 (81건)	채용 방식					채용인원		
		공고 차수	공고 여부	공고기간	평가방법	심사방법 등 객관적 기준 마련 여부 (마련 47 / 미마련 34)	채용예정 인원	지원자 수	최종 선발 인원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5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팀장1 사무원1	팀장 4 사무원 7	팀장 1 사무원 2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3	3	3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2	1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2	1
		3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3	0	0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0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2	5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5	1	1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0	0
		3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2	3	2
		4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2	2
		5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2	1	1
		6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1

사업단명 (29개)	채용직종 (81건)	채용 방식					채용인원		
		공고 차수	공고 여부	공고기간	평가방법	심사방법 등 객관적 기준 마련 여부 (마련 47 / 미마련 34)	채용예정 인원	지원자 수	최종 선발 인원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0	0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3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5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0
		2차	○	-	면접평가	×	1	1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0	0
		2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0	0
		3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0	0
		4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0	0
		5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0	0
		6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3	0	0
		7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3	4	3
-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8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4	1


사업단명 (29개)	채용직종 (81건)	채용 방식					채용인원		
		공고 차수	공고 여부	공고기간	평가방법	심사방법 등 객관적 기준 마련 여부 (마련 47 / 미마련 34)	채용예정 인원	지원자 수	최종 선발 인원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4	0
		2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1	1
-	-	1차	○	-	면접평가	×	미정	0	0
		2차	○	-	면접평가	×	미정	2	2
	-	1차	○	-	면접평가	×	1	1	1
	-	1차	○	-	면접평가	×	1	7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1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1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심사	○	1	9	1
-	-	1차	○	-	면접평가	×	1	2	1
	-	1차	○	-	면접평가	×	1	1	1
	-	1차	○	-	면접평가	×	1	0	0
		2차	○	-	면접평가	×	1	2	1
	-	1차	○	-	면접평가	×	1	0	0
		2차	○	-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0	0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5	12	4

사업단명 (29개)	채용직종 (81건)	채용 방식					채용인원		
		공고 차수	공고 여부	공고기간	평가방법	심사방법 등 객관적 기준 마련 여부 (마련 47 / 미마련 34)	채용예정 인원	지원자 수	최종 선발 인원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3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0	0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5	0
		3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5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1
-	-	1차	○	-	서류평가	×	1	4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3	1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5	25	15
		2-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0	0
		2-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7	4
		3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6	7	6
		4-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2	0	0

사업단명 (29개)	채용직종 (81건)	채용 방식					채용인원		
		공고 차수	공고 여부	공고기간	평가방법	심사방법 등 객관적 기준 마련 여부 (마련 47 / 미마련 34)	채용예정 인원	지원자 수	최종 선발 인원
		4-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2	6	2
		5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3	4	2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3	1
	-	2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4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5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3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4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4	7	4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6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4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7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2	1
	-	1차	○	-	서류평가, 면접평가	×	1	1	1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 3. 23.)

 국민권익위원회 <small>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small>		<h1>보도자료</h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3. 23.(목) 11:00	배포 일시	2023. 3. 23.(목) 11:00		
담당 부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AX	(-)	
		담당자	AY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확립한다”**
**-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기관 비공무원(무기계약직·기간제)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권고 -**

-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신설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 신설된 센터 주요업무: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 공공부문 채용 관련 전수조사 ▲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는 공무원 외 행정·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운영 규모는 42만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채용비리 사례 〉

- ▶ ◇◇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 각 징역 1년 6개월 · 1년 선고('22.8.12, 언론보도)
- ▶ ○○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22.6.12, 언론보도)
- ▶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22.5.3, 언론보도)
- ▶ ●●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벌금형 선고('20.5.31, 언론보도)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였던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채용 절차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시정

제 목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적정 수령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¹⁴⁾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4)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비의 가족 복지점수도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에 맞게 배정하여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에 변동(세대분리, 사망 등)이 생긴 경우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했고, 전북대학교는 연 2회 반기별로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Z 등 교직원 88명은 [별표]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23. 11.까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는 정기적으로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Z 등 교직원 88명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족수당 81,160,00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하였고, 위 교직원 88명 중 78명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을 위반하여 맞춤형 복지비 15,650,00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배포하고 신입교원 연수회 등에서 교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이나 맞춤형 복지비의 가족 점수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들이 부양가족(변동) 신고서 제출 의무를 미숙지하여 세대분리, 사망 등 개인적인 부양가족 변동 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변동사항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직원에게 과오지급된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환수하고, 향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변경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과오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향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등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Z 등 88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조치하며, (통보)
- ③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합계 81,160,000원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15,650,000원을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부양가족현황		사유 (일자)	부적정 수령액				소계
				관계	대상자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1	-	-	Z	-	-	-	-	1,200	-	250	1,450
2	-	-	-	-	-	-	-	1,180	-	250	1,430
3	-	-	-	-	-	-	-	1,200	-	250	1,450
4	-	-	-	-	-	-	-	340	-	50	390
5	-	-	-	-	-	-	-	560	-	100	660
6	-	-	-	-	-	-	-	340	-	50	390
7	-	-	-	-	-	-	-	260	-	50	310
8	-	-	-	-	-	-	-	420	-	50	470
9	-	-	-	-	-	-	-	380	-	50	430
10	-	-	-	-	-	-	-	760	-	150	910
11	-	-	-	-	-	-	-	1,060	-	200	1,260
12	-	-	-	-	-	-	-	300	-	50	350
13	-	-	-	-	-	-	-	820	-	150	1,940
				-	-		-	820	-	150	
14	-	-	-	-	-	-	-	360	-	50	410
15	-	-	-	-	-	-	-	300	-	50	350
16	-	-	-	-	-	-	-	1,200	-	250	2,900
				-	-		-	1,200	-	250	
17	-	-	-	-	-	-	-	1,200	-	250	1,450
18	-	-	-	-	-	-	-	680	-	100	780
19	-	-	-	-	-	-	-	1,200	-	250	2,900
				-	-		-	1,200	-	250	
20	-	-	-	-	-	-	-	1,200	-	250	2,900
				-	-		-	1,200	-	250	
21	-	-	-	-	-	-	-	260	-	50	310
22	-	-	-	-	-	-	-	820	-	150	970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부양가족현황		사유 (일자)	부적정 수령액				소계
				관계	대상자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23	-	-	-	-	-	-	-	1,080	-	200	2,560
				-	-		-	1,080	-	200	
24	-	-	-	-	-	-	-	960	-	200	1,160
25	-	-	-	-	-	-	-	420	-	50	470
26	-	-	-	-	-	-	-	1,200	-	250	1,450
27	-	-	-	-	-	-	-	660	-	100	760
28	-	-	-	-	-	-	-	1,000	-	200	2,400
				-	-		-	1,000	-	200	
29	-	-	-	-	-	-	-	580	-	100	680
30	-	-	-	-	-	-	-	340	-	50	780
				-	-		-	340	-	50	
31	-	-	-	-	-	-	-	1,060	-	200	1,260
32	-	-	-	-	-	-	-	660	-	100	760
33	-	-	-	-	-	-	-	500	-	100	600
34	-	-	-	-	-	-	-	600	-	150	750
35	-	-	-	-	-	-	-	480	-	100	580
36	-	-	-	-	-	-	-	320	-	50	370
37	-	-	-	-	-	-	-	1,200	-	250	2,900
				-	-		-	1,200	-	250	
38	-	-	-	-	-	-	-	1,200	-	250	2,900
				-	-		-	1,200	-	250	
39	-	-	-	-	-	-	-	260	-	50	620
				-	-		-	260	-	50	
40	-	-	-	-	-	-	-	660	-	100	1,520
				-	-		-	660	-	100	
41	-	-	-	-	-	-	-	1,200	-	250	1,450
42	-	-	-	-	-	-	-	740	-	150	890
43	-	-	-	-	-	-	-	1,200	-	250	1,450
44	-	-	-	-	-	-	-	500	-	100	600
45	-	-	-	-	-	-	-	760	-	200	2,410
				-	-		-	1,200	-	250	
46	-	-	-	-	-	-	-	280	-	50	330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부양가족현황		사유 (일자)	부적정 수령액				소계
				관계	대상자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47	-	-	-	-	-	-	780	-	150	930	
48	-	-	-	-	-	-	240	-	50	290	
49	-	-	-	-	-	-	1,120	-	200	1,320	
50	-	-	-	-	-	-	1,200	-	250	1,450	
51	-	-	-	-	-	-	460	-	100	560	
52	-	-	-	-	-	-	1,200	-	250	1,450	
53	-	-	-	-	-	-	1,200	-	250	1,450	
54	-	-	-	-	-	-	300	-	50	350	
55	-	-	-	-	-	-	1,200	-	250	1,450	
56	-	-	-	-	-	-	1,200	-	250	1,450	
57	-	-	-	-	-	-	1,200	-	250	1,450	
58	-	-	-	-	-	-	1,200	-	250	1,450	
59	-	-	-	-	-	-	580	-	100	680	
60	-	-	-	-	-	-	-	680	-	100	1,560
				-	-		-	680	-	100	
61	-	-	-	-	-	-	860	-	150	1,010	
62	-	-	-	-	-	-	920	-	200	1,120	
63	-	-	-	-	-	-	-	1,200	-	250	3,560
				-	-		-	1,200	-	250	
				-	-		-	560	-	100	
64	-	-	-	-	-	-	-	1,120	-	200	2,640
				-	-		-	1,120	-	200	
65	-	-	-	-	-	-	-	680	-	100	1,560
				-	-		-	680	-	100	
66	-	-	-	-	-	-	1,200	-	250	1,450	
67	-	-	-	-	-	-	280	-	50	330	
68	-	-	-	-	-	-	1,000	-	200	1,200	
69	-	-	-	-	-	-	-	380	-	100	960
				-	-		-	380	-	100	
70	-	-	-	-	-	-	1,200	-	250	1,450	
71	-	-	-	-	-	-	1,200	-	250	1,450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부양가족현황		사유 (일자)	부적정 수령액				소계
				관계	대상자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72	-	-	-	-	-	-	-	660	-	100	1,610
				-	-		-	700	-	150	
73	-	-	-	-	-	-	-	1,060	-	200	1,260
74	-	-	-	-	-	-	-	1,200	-	250	2,900
				-	-		-	1,200	-	250	
75	-	-	-	-	-	-	-	860	-	200	1,060
76	-	-	-	-	-	-	-	1,200	-	250	1,450
77	-	-	-	-	-	-	-	180	-	50	230
78	-	-	-	-	-	-	-	220	-	50	270
79	-	-	-	-	-	-	-	140	-	0	280
				-	-		-	140			
80	-	-	-	-	-	-	-	40	-	0	40
81	-	-	-	-	-	-	-	20	-	0	20
82	-	-	-	-	-	-	-	80	-	0	80
83	-	-	-	-	-	-	-	160	-	0	160
84	-	-	-	-	-	-	-	160	-	0	160
85	-	-	-	-	-	-	-	20	-	0	20
86	-	-	-	-	-	-	-	180	-	0	360
				-	-		-	180			
87	-	-	-	-	-	-	-	160	-	0	160
88	-	-	-	-	-	-	-	60	-	0	120
				-	-		-	60			
총 88명								81,160		15,650	96,810

* 1년 이상 수령자 76명(연번 1~76번), 1년 미만 수령자 12명(연번 77~88번)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집행 및 피복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는 자체 '교직원 체육행사·등반대회 계획'에 따라 매년 교내 구성원의 소속감 증진을 위해 교직원 체육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동 행사를 위해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복을 구매·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 및 「대학회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교육부 「국립대학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20~2023년도)」 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는 ①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②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③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개발비로서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에 편성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등을 말하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는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 「국립대학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2020~2023년도)」 III.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상시착용 근무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제경비와 당직용 침구 구입비를 말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피복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사회복무요원, 민원실 근무자, 시설관리직, 단순노무직 등)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예산은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집행 하여야 했고, 피복비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일반수용비 편성·집행 부적정

일반수용비 예산은 기타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집행이 가능함에도, 전북대학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계 3,581벌의 단체복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예산 합계 380,450천 원을 편성하고 361,021천 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관련 지침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복비 지급 부적정

피복비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전북대학교는 [표 1]과 같이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업무 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소속 교직원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인당 약 10만 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피복비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피복비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피복비 지급 현황

연번	회계연도	구입 물품*	구매량·지급 인원 (벌/명)	예산 집행액 (원)	1인당 지급액 (원)
1	2020	피복	888	95,510,000	90,000 ~ 110,000
2	2021	피복	900	106,713,400	40,000 ~ 120,000
3	2022	피복	907	106,524,038	40,000 ~ 120,000
4	2023	피복	886	52,274,000	59,000
합계			3,581	361,021,438	약 100,800

* 학교 로고, 행사명 등 없이 브랜드명이 그대로 노출된 피복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일반수용비 편성·집행 부적정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일반수용비 설정 중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를 적용하여 교직원 체육행사 운영 물품으로 단체복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교육부 「국립대학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20~2023년)」 및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20~2023년)」에 따르면 ‘일반수용비(세목 210-01)’의 원가통계목상 ‘물품구입비’란 행사 등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비를 의미하므로, 모든 소속 교직원 약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된 동 예산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복비 지급 부적정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교직원 체육행사를 위해 구입한 피복은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내 구성원의 소속감 증진을 위하여 AW 결재를 득하고 직급별 간담회,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도 체육복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배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북대학교는 향후 직급별 간담회, 공무원·대학 노조와의 소통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 관련 제 규정 등을 준수하여 감사 이후 2024년부터 단체복 구입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처분 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도 체육복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표 2]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도 직원들의 피복비 지급에 대해 감사 처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적사례

연번	연도	감사 기구명	피감 기관명 (감사유형)	처분 요구	내용 (요약)	비고
1	2019	△	● (종합감사)	피복비 집행 부적정 (기관주의)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피복비(210-03)의 집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정업무 종사자가 아닌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피복을 일괄 지급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	중앙부처
2	2020	◎	● (종합감사)	피복비 집행 부적정 (기관주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9년 직원 단체복이라는 명목으로 구매하여 지급하는 등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사실상 의류비 지원으로 피복비를 집행하여 예산 편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

또한, 2019년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피복비 집행 부적정을 포함한 기관 운영 감사 반복 지적 사안에 대해 대행감사를 요청하고 조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기에 전북대학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북대학교가 감사 기간 이전인 2017년부터 AW의 결재를 득하여 체육대회 단체복을 지급해 온 점, 감사 이후 예산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2024년 단체복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점은 처분 시 감안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① ▼(■)에게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향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비목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피복비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미활용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북 ▽▽에 위치한 8필지 등을 ● 학생들의 교과 실험실습을 비롯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의 시험연구 지원,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실습 포지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3조 및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총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위임 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총장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익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임대, 매각 등)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하고, 미활용 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전북대학교는 2020. 9. 11.에 「● 실습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는 전북 ▽▽에 위치한 8필지 등 부지 합계 19,268.8㎡를 실습 포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별표]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과 같이 전북 ▽▽에 위치한 8필지(부지 합계 19,268.8㎡, 소유자 국-교육부)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한 2020. 9. 이후 2023. 11. 감사일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유지·보수·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유휴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필지의 경우 토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배수로 공사 및 토양 개량을 위한 별도의 예산 소요로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활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본부(●) 및 일선 부서(■, □)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소요 예산(배수로 공사 등) 및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통해 동 필지를 학과 실습 토지로 지속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여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	답(畓)	1,420.7	
2	-	답(畓)	2,207.4	
3	-	답(畓)	3,106.0	
4	-	답(畓)	4,014.8	
5	-	답(畓)	1,988.1	
6	-	답(畓)	1,240.8	
7	-	답(畓)	2,769.7	
8	-	답(畓)	2,521.3	
합계(8필지)			19,268.8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시정완료)

제 목 게스트하우스 운영 예산 낭비 및 목적 외 사용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전북대학교 ▲회계 운영비 관리 및 집행 지침」에 따라 2010. 1. 1.부터 2020. 4. 12.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원금 연구 수익의 간접비 예산으로 서울 게스트하우스(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였다.

▲은 2023. 6. 1.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표 1]과 같이 2023. 9.부터 소속 직원 및 전북대학교 교직원의 수도권 내 업무 수행(출장)에 따른 숙박 편의 및 교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서울 게스트하우스(2개소) 운영을 재개하였다.

[표 1] 2023년 전북대학교 운영 서울 게스트하우스 개요

구분	게스트하우스 명칭	
	표	ㅎ
운영 규모(실)	2	1
면적(㎡)	54(약 16평)	32(약 9평)
계약 요금(천 원)	121(1실) / 198(1실)	151(1실)
임대 기간	1년 (2023. 9. ~ 2024. 8.)	
사용자 지급 외 차액분 재원	▲회계 연구개발비(간접비)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예산 낭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의 직접비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의 간접비로 되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법, 영, 규칙, 이 고시,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협약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간접비 계상 및 관리·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고, 회계 담당 직원은 회계법규와 연구비 관리규정 및 본 지침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게스트하우스 예산 목적 외 사용

「▲ 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의 단장은 ▲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사립대학 ▲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2020~2023년)」(교육부) “II. ▲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2. 예산 관리 유의사항의 기본원칙”에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 운영비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길라잡이II」 “제5장 운영계산서, 6. 간접비 수익”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지원금 연구수익의 간접비는 [표 2]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의 기준에 맞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연구개발비(간접비) 사용 용도

항목	사용 용도	비고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등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전복대는 연구개발비(간접비)의 ‘기관 공통 비용’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게스트하우스 운영

따라서, ▲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불필요한 낭비 없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을 사용하여야 했다.

또한, ▲은 공무 외 사적인 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 및 전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숙박비를 전액 징수하는 등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예산 낭비

▲은 [표 3]과 같이 2020. 1.부터 202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공실률이 평균 64%에 달함에도 게스트하우스 2~3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으로 합계 96,820,000원을 집행해 왔다. 세부 이용 현황은 [별표] “게스트하우스 이용 현황”과 같다.

그런데, ▲이 [표 3]과 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고 2024. 3. 현재 정상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일만큼 이용자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면 40,394,000원이 소요된다고 산출되는 바, 43,226,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폐업(2023. 4. 현재)으로 □□에 지급한 13,200천 원은 제외하고 합계 지급 금액을 83,620천 원으로 산정하여 예산 절감액 산출

[표 3] 게스트하우스 이용 및 추정 손실액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년)	사용 기간 (월)	게스트하우스명	계약 단가	대여 실수 (개)	계약 일수 (일)	지급 금액 * 단가*실수*일수 (A)	이용 현황					미운영 시 지급 추정 금액			추정 손실액 (A-D)	
							사용 (실*일) (B)		미사용 (실*일)	계	이용율 (%)	공실률 (%)	정상 단가* (C)			지급 추정 금액 (D=B*C)
							주 중	주 말					주 중	주 말		
2020	1~4	-	110	1	103	45,320	21	13	288	412	30	70	175	185	6,080	22,352
			3		56	34	185	192					16,888			
		□□	110	2	60	13,200	51	30	39	120	68	32	폐업			
		-	110	2	43	9,460	8	7	71	86	17	83	165.5	171	2,521	6,939
2023	9~10	-	150	1	61	9,150	13	12	36	61	41	59	199	257	5,671	3,479
		-	121	1	61	19,690	13	9	81	122	34	66	156	214	3,954	10,456
			198	1			12	7					258	312	5,280	
합계(전체)			-	-	-	96,820	174	112	515	801	36	64	-	-	-	
합계(□□ 제외)			-	-	-	83,620	-	-	-	-	-	-	-	-	40,394	43,226

* 자료: 전북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각 호텔 홈페이지에 2024. 3. 게시된 정상 예약 금액 기준)

나. 게스트하우스 예산 목적 외 사용

▲은 [표 4]와 같이 2020. 1.부터 2023. 10. 감사일 현재까지 ▲ 및 전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가족여행 등 사적 용도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109건에 대해 숙박 비용 전액이 아닌 9,605천 원만을 징수하여 연구개발비(간접비) 3,670천 원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표 4] 게스트하우스 사적 이용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게스트하우스명	이용 목적	이용 현황 (박)	계약 비용	실제 징수 비용	차액
2020년	-	-	56	6,160 (1박당 110)	4,010 (1박당 70~80)	2,150 (1박당 30~40)
	■■■	-	27	2,970 (1박당 110)	1,910 (1박당 70~80)	1,060 (1박당 30~40)
	-	-	12	1,320 (1박당 110)	860 (1박당 70~80)	460 (1박당 30~40)
계			109	12,606	9,605	3,67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예산 낭비

① 관계기관 의견

▲은 서울 게스트하우스가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역, 특히 서울 지역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비(간접비) 재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연수원이 없는 전북대학교의 특성상 서울 게스트하우스는 그간 서울 소재 연수원의 기능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은 학교 연수원이 있는 타 대학에서도 연수원 이용자가 사용료는 부담하나 연수원 관리비(관리직원 인건비, 건물 유지비, 공공요금 등)는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바, 공실에 따른 미사용분 지급액은 구성원 복지 차원의 학교 연수원 관리비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은 2020. 1.부터 2023. 10. 감사일 현재까지 공실률 64%에 따른 미사용분 납부액을 연수원 운영비라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10년 넘게 동일한 방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2023. 3. 정상 단가로 추정 산출했을 때보다 43,226,000원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점을 감안하면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게스트하우스 예산 목적 외 사용

① 관계기관 의견

▲은 공무 출장 직원이 게스트하우스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최초 운영 계획 수립 시부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산 절감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 및 전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계약한 금액보다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공무 외 이용을 허용한 것은 ▲ 및 전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을 제고하여 예산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은 2023년부터 공무 외 이용의 경우 계약된 숙박 금액 전액을 개인이 부담토록 개선하였고, 교육부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3년 계약 만료(2024. 8. 31.) 후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종료하였음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는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을 높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무 외 이용자에게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 및 전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지원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최초 운영한 2009년부터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공무 외 목적의 게스트 하우스 사용을 허용해 왔던 점, 코로나19로 중단 후 2023년 운영 재개시부터 공무 외 사용 시 개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점, 계약 만료 후 2024. 8. 31. 부터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종료한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관련 법령 및 지침과 달리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을 낭비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에게 경고 조치하기 바라며, (기관경고)
- ② ▲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시정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시정완료)]

[별표]

게스트하우스 이용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호텔명	객실수	이용 현황 (박)			월 의무부담 객실 사용료	월 객실사용에 따른 수입금 합계 (위약금 포함)			사후정산 ▲ 부담금			이용률 (%)	공실률 (%)	객실당 이용단가		
			공적	사적	계		공적 (여비)	사적 (개인)	계	공적 여비 지원	사적 이용 지원	미사용분 산단 부담금					
강남	'20년	1월	-	4	52	25	77	13,640	3,690	1,840	5,530	2,030	970	5,110	62	38	110/1일
		2월	-	4	12	21	33	12,760	850	1,590	2,440	470	800	9,050	28	72	
		3월	-	4	4	7	11	13,640	280	520	800	160	280	12,400	9	91	
		4월	-	4	0	3	3	5,280	0	230	230	0	100	4,950	6	94	
		합계			68	56	124	45,320	4,820	4,180	9,000	2,660	2,150	31,510	30	70	
강남	'23년	9월	-	1	5	2	7	4,500	500	300	800	250	0	3,450	23	77	150/1일
		10월	-	1	14	4	18	4,650	1,400	600	2,000	700	0	1,950	58	42	
		합계			19	6	25	9,150	1,900	900	2,800	950	0	5,400	41	59	
강남 외	'20년	1월	-	2	38	13	51	6,820	2,680	930	3,610	1,500	520	1,190	82	18	110/1일
		2월	-	2	16	14	30	6,380	1,130	1,040	2,170	630	540	3,040	52	48	
		3월	-	2	1	11	12	6,820	70	860	930	40	420	5,430	19	81	
		4월	-	2	2	1	3	2,640	140	70	210	80	40	2,310	13	87	
		합계			57	39	96	22,660	4,020	2,900	6,920	2,250	1,520	11,970	47	53	
강남 외	'23년	9월	-	2	7	4	11	9,570	700	484	1,184	532	0	7,854	18	82	(객실1) 198/1일
		10월	-	2	20	10	30	10,120	2,000	1,441	3,441	1,267	0	5,412	48	52	(객실2)
		합계			27	14	41	19,690	2,700	1,925	4,625	1,799	0	13,266	34	66	121/1일
최종 합계				171	115	286	96,820	13,440	9,905	23,345	7,659	3,670	62,146	36	64	-	

※ 이용률 및 공실률은 계약일수에 따른 총 계약 객실수를 반영한 값임

교 육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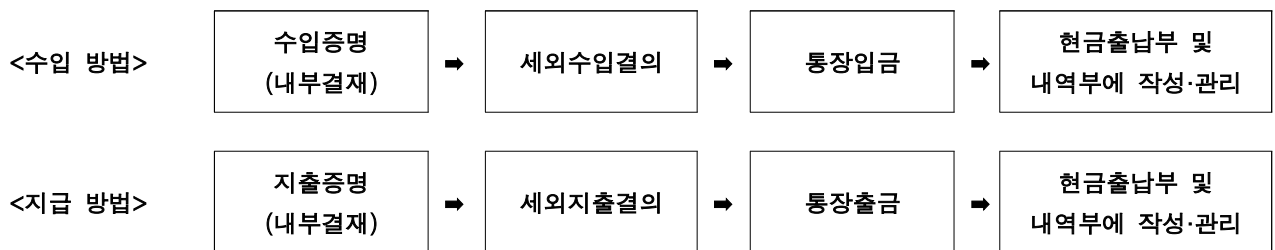
기관주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출납부 작성 누락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이하 “♡♡”라 한다)는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회계 세입 및 지출, 재산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업무 절차로 세입세출외현금¹⁵⁾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처리절차



15)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잡증금을 말함

- ① 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계약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자 미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부시키는 금전
- ② 보관금: 채권압류금, 퇴직적립금, 시설사업기금, 국유재산사용료, 4대보험부담금 등으로 법령이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단위 학교에 보관 상태로 있는 자금
- ③ 기타잡증금: 이자수입, 각종성금, 연수경비, 기타잡증금 등으로 보증금 및 보관금 외의 자금으로 학교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에 따라 정리하여 관리하고, [그림 2]와 같은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3조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3>							
현금출납부							
년	월	일	적요	채주(납부자)	수입액 ①	지출액 ②	잔액 ①-②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따라서, ♀♀ 소속 출납원은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규정된 세부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리·관리하는 데 있어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했고, ♀♀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관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소속 출납원은 [표]와 같이 2020. 10. 1.부터 2022. 2. 28.까지 1,363건에 대한 '세외수입결의 및 세외지출결의'를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누락하여 그 내역을 현금출납부 및 내역부에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합계 12,941,036,990원을 집행해 왔다.

[표] 현금출납부 누락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지출 집행 현황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2020. 10. 1. ~ 2021. 2. 28.)	172	1,818,693,290	19	1,809,518,370	191	3,628,211,660
2021 (2021. 3. 1. ~ 2022. 2. 28.)	1,121	4,644,754,020	51	4,668,071,310	1172	9,312,825,330
계	1,293	6,463,447,310	70	6,477,589,680	1,363	12,941,036,990

※ ♀♀는 감사 기간 중 누락(2020. 10. 1. ~ 2022. 2. 28.)된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출납부 및 내역부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기로 작성·마련

그 결과, 학교회계 시스템 내 세입세출외현금 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할 일시 보관금 등의 일체 수입·지출 회계처리 내역이 누락되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행정업무 경험이 없었던 업무 담당자가 ♀♀로 발령을 받아 회계처리에 소홀함이 있었으나, 향후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용함에 있어 현금출납부 작성을 철저히 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미숙하여 현금출납부 작성은 소홀하였지만 증빙서류 없이 수입·지출된 세입세출외현금이 없으며, 감사 기간에 누락된 현금출납부는 수기로 모두 작성·마련하였고, 2022. 3. 이후 현금출납부를 철저히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교 육 부

시정·통보

제 목 연구소 유지관리 및 검증 용역 업체 기성 대금 과다 청구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2021. 12. 30. ■■(대표: AA)과 ‘동물안전 3등급¹⁶⁾ 시설 유지관리 및 검증 용역(이하 “유지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위한 계약(계약금 864,164천 원, 계약기간 3년)을 체결하여 ☆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위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기명날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산출내역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은 계약 상 산출내역서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적정금액만을 전북대학교 ▲에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하여야 했다.

16)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고위험 병원체를 연구·취급할 수 있는 연구시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은 [별표] “유지관리 사업비 과다 청구·수령 현황”과 같이 2022. 1.부터 2023. 8.까지 산출내역서 상 용역 기성부분에 대한 적정금액이 526,760천 원임에도 545,800천 원을 청구하여 19,040천 원을 과다 수령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업체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면밀한 확인을 거쳐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집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용역 기성부분 대금 19,040천 원을 과다 청구하여 수령한 ■■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여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시정)
- ② 향후 용역업체가 기성부분 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유지관리 사업비 과다 청구·수령 현황

(단위: 천 원)

산출내역서 기준		청구액	적정금액	과다 수령액	
구분	금액				
정기점검 (A)	인건비	58,575	32,540	32,540	0
	제경비 (인건비의 57%)	33,388	25,000 (77%)	18,547 (57%)	6,453
	소계 (인건비+제경비)	91,963	57,540	51,087	6,453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18,392	12,520 (22%)	10,220 (20%)	2,300
	계 (인건비+제경비+기술료)	110,355	70,060	61,307	8,753
압력점검 (B)		128,028	62,524	62,524	-
종합점검 (C)		52,581	18,427	18,427	-
재인증 (D)		323,761	235,696	235,696	-
훈증소독 (E)		72,825	41,125	41,125	-
소 계 (F=A+B+C+D+E)		687,550	427,832	419,079	8,753
일반관리비 (G=F*6%)		41,253	28,750 (6.7%)	25,145 (6%)	3,605
이윤 [H=(F+G)*7.8%]		56,801	39,600 (8.75%)	34,649 (7.8%)	4,951
계 (I=F+G+H)		785,604	496,182	478,873	17,309
부가가치세 (J=I*10%)		78,560	49,618	47,887	1,731
합 계		864,164	545,800	526,760	19,040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유지보수 업체의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간 무상 제공 범위를 벗어난 국유재산 사용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 1]과 같이 2016. 5. 2.부터 2019. 2. 28.까지(1차 계약), 2019. 5. 1.부터 2022. 2. 28.까지(2차 계약)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전북대학교 PC HELP DESK 서비스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현황

계약연도	업체명	대표자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상주 인원	비고
2016	■■	AB	2016. 5. 2. ~ 2019. 2. 28.	406,753,220원 (34개월)	4명 이상	1차 계약
2019	■■	AB	2019. 5. 1. ~ 2022. 2. 28.	431,800,000원 (34개월)	3명 이상	2차 계약

또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예규)(이하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계약문서¹⁷⁾ 등에 따라 ‘전북대학교 학내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차 계약 상대방(■■)에게 국유재산(행정재산)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내 통합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도 및 시설 사용, 물품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 * * * *에서 발주한 일반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제안 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에서 2016. 1. 29. * * * * *으로 보낸 제안요청서 ‘다. 특수사항’에 따르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도 및 시설사용, 물품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간 사용승인 통보(2016. 5. 18.)” 및 “2019년도 유지보수 용역 1차 계약 추진(2019. 4. 30.)”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내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역 계약에 의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¹⁸⁾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통보하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명시하였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유지보수 업체는 합의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된 공간을 학내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빠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 과정 및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내용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대표 AB는 2016. 5. 2.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 19. 전북대학교와의 계약 범위(학내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무상 사용)를 벗어나 국유재산인 대학 내 사무실에 ‘■■’라는 상호(법인명)로 사업자등록¹⁹⁾을 하면서, 업태에는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임대업, 서비스업으로, 종목에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경미한 공사,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으로 명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북대학교 밖에 소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을 국유재산인 대학 내 사무실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6. 5. 19.부터 2022. 2. 28.까지 용역제공 기간 동안 ‘학내 통합 유지보수’라는 당초 목적을

18) 유지 보수에 필요한 수도 및 시설 사용, 물품 등을 무료로 이용

19) 관할세무서에 사업자주소 정정신고를 통해 이전

벗어나 [표 2]와 같이 4,124,147천 원 상당의 물품을 대학에 납품하는 등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영리행위를 하였다.

[표 2] 연도별 **□□** 물품 납품 현황

(단위: 천 원)

회계 구분	2016회계연도 (2016. 5. ~ 2017. 2.)	2017회계연도 (2017. 3. ~ 2018. 2.)	2018회계연도 (2018. 3. ~ 2019. 2.)	2019회계연도 (2019. 3. ~ 2020. 2.)	2020회계연도 (2020. 3. ~ 2021. 2.)	2021회계연도 (2021. 3. ~ 2022. 2.)	합 계
대학회계	415,490	459,861	383,267	455,450	670,719	393,904	2,778,691
산단회계	110,522	213,093	267,859	253,706	244,826	226,068	1,316,074
발전지원 재단회계	6,233	1,680	3,691	6,991	2,472	8,315	29,382
합 계	532,245	674,634	654,817	716,147	918,017	628,287	4,124,147

한편, 전북대학교는 1차 계약 이후 2차 계약 체결(2019. 5. 1.) 당시에는 공간 제공 통보 부속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어 **□□**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국유재산인 사무실에 '**□□**'라는 상호(법인명)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23. 12.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의 경우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의거 원활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 용역업체 상주 인력에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을 추진하였고, 용역 계약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해 용역업체 파견 인력에게 단순 공간제공을 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장으로 사용허가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의 동의 없이 유지보수업체가 무단으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에 본교 공간 제공 장소를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납부²⁰⁾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향후 사업 추진 시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외부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학내에 두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간 제공이 이루어진 점과 해당 업체가 사용료 일부를 납부한 점, 공간 사용 범위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북대학교-■■ 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바, 계약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대학에 있는 점, 공간 제공 계약 담당부서와 국유재산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로 하여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에 의해 무상 제공 범위를 벗어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 규정 취지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0) 업체로부터 1,694,970원 회수 완료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안내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 및 「전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 및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수립,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등 대학재정기획업무를, ▲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 영역) 관리 등 연구 학술·진흥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2017~) 및 「2022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지급 제한 및 비용 환수에 따르면 “과거 지도제자논문을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등에 게재하여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 매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이하 교연비”라 한다)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이나 허위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자체 교연비 지급기준 마련 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연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교연비를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다만, 전북대학교는 2020. 6. 8. [표 1]에 대한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 및 예산증액승인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20. 7. 15. 교육부로부터 변경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승인받았다.

[표 1] 전년 대비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변경사항(“20.6.8.)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변경 이유
<input type="checkbox"/> 비용 환수 - 부당한 방법이나 허위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예시) 지도학생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한 후 제목만 변경하여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과거 지도 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비용 환수 - 부당한 방법이나 허위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예시) 지도학생의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학생의 논문을 요약 또는 그대로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비용환수 대상 명확화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는 2020. 6. 17. 2020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계획서 제출 안내 시 교연비 환수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당초 “지도학생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한 후 제목만 변경하여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경우”와 “과거 지도 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도 학생의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학생의 논문을 요약 또는 그대로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로 통합·변경하여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였다.

그 결과 ▲는 학생 논문 지도교수인 AC 등 8명의 교원에게 제자와 공동으로 수행한 논문 내용을 주저자가 아닌 교신저자 등 공동저자로 학술지 등에 게재한 실적을 인정하여 [별표 1] “학위논문 실적 인정 교연비 지급 현황(2019~2022년)”과 같이 교연비 261,800천 원을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2020. 6. 3. 교육부의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협의 및 증액 신청 안내”에 따라 2020. 6. 8.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 및 예산증액승인신청서 제출” 공문에 [표 1]을 첨부하여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2020. 7. 15. 전북대학교에서 제출한 승인신청서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협의 및 증액 신청 검토결과 회신” 공문을 전북대학교가 신청한 [표 1] 변경사항에 따라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 기획처는 2020. 7. 20.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계획서 제출 안내” 공문을 단과대학 등 대학 내 본부 및 소속기관에 보내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위 [표 1]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였다.

그 결과 일부 교수들은 다른 실적이 있음에도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동일 제목으로 학술지 등에 공동저자로 게재하거나 교원이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한 연구실적을 추후 학생이 동일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변경사항에 따라 지도교수 등으로 학생 논문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교연비 환수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전북대학교는 [표 1]의 변경사항은 비용 환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변경사항이 비용 환수 대상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될 오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24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마련 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가 [표 1]의 비용 환수대상 변경사항을 교육부로부터 2020. 7. 15. 승인 받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는 [표 1]의 변경사항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 변경사항 안내에 따라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동일 제목으로 학술지 등에 공동저자로 게재하거나 교원이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한 연구실적을 추후 학생이 동일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논문이 [별표 2] “학생논문 실적 외 대체 가능한 실적 현황”과 같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의 비용 환수대상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안내한 전북대학교 기획처에 엄중 기관경고 조치하기 바라며, **(기관경고)**
- ② 2024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을 마련 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학위논문 실적 인정 교연비 지급 현황(2019~2022년)

과제기간	교원							교연비 (천 원)	석사 학위자		비고
	성명	대학	학과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표절률		성명	논문 신청 및 학위일	
2018.0. ~ 2020.0.	AC	-	-	-	-	-	-	-	-	-	지도 교수
2019.0. ~ 2020.0.	-	-	-	-	-	-	-	-	-	-	지도 교수
2019.0. ~ 2021.0.	-	-	-	-	-	-	-	-	-	-	지도 교수
2019.0. ~ 2021.0.	-	-	-	-	-	-	-	-	-	-	심사 위원
2019.0. ~ 2021.0.	-	-	-	-	-	-	-	-	-	-	지도 교수
2019.0. ~ 2021.0.	-	-	-	-	-	-	-	-	-	-	지도 교수
2019.0. ~ 2021.0.	-	-	-	-	-	-	-	-	-	-	심사 위원
2021.0. ~ 2023.0.	-	-	-	-	-	-	-	-	-	-	지도 교수
합계								261,800			

[별표 2]

학생논문 실적 외 대체 가능한 실적 현황

교원별 인정 가능한 타실적

성명	대체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비고
AC	-	-	-	다른 대체 논문이 있어 환수금액 없음
-	-	-	-	
-	-	-	-	
-	-	-	-	
-	-	-	-	
-* (공동 저자 논문3편)	-	-	-	
	-	-	-	

※ 공동저자 논문 3편으로 학술트랙 교연비 실적 인정 가능

교원별 인정 가능한 사유(다른 실적은 없음)

성명	교연비 실적 인정 요구 사유	환수금액
-	-	타당한 사유가 있어 환수금액 없음
-		

교 육 부

징계·시정·통보(2)

제 목	간접비 납부 대상인 ㄷ제작비를 간접비 납부 대상이 아닌 위탁연구 개발비로 집행하여 간접비 과소 납부 등 연구비 집행 절차 위반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 &을 두어 연구비 중앙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 지원을 받아 설립된 전북대학교 ▲ 소관 ○는 대학에서 수주한 ● 용역과제 외 외부 신청에 의한 ●을 실시하고 일정 사용료 수납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간접비 납부 대상 관련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 등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연구 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별표 3>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직접비의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이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다.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22조 제4항 및 「전북대학교 간접비 및 관리·운영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간접비 납부 대상액에서 위탁연구개발비 외 연구재료비는 간접비 납부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간접비 산정 방식: (연구비-부가세-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 비율

나. 연구비 중앙구매 관련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하는 물품·용역 계약 중 1회 구입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시작품 및 시설 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대학교 연구물품 구입 및 귀속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장에게 중앙구매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연구물품 구입 및 귀속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재료 등, 연구실 기기 및 비품 중 건당 구입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하여 ▲장이 중앙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장은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견적 전자입찰, 경쟁입찰(****) 방식²¹⁾을 통해 집행한다.

한편,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별표 3>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간접비 징수율은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연구비 총액의 20%라고 되어 있고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고 과제 확인이 완료된 이후 위탁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되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의 청구 없이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시설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기계 설비, 건물 내·외부의 구축물 등 시설 사용허가 시 일정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가, 나, 다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 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재료 제작비를 연구재료비로 편성하여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에 중앙구매 요청하여야 하고, 전북대학교는 대학 내 고가기자재 등 시설물에 대해 관리기관(부서)을 정하여 사용료 징수 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간접비 과소 납부

●과 관련하여 AD는 2022. 4. 14. ●●와 “AF 공동주택 신축공사 ●” 용역 과제(계약금 231,000천 원)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상 간접비 납부 대상인 연구재료비에 해당되는 ㄷ제작비 50,000천 원을 간접비 납부 대상이 아닌 위탁연구 개발비로 계상하여 직접비의 20%인 간접비 10,000천 원을 ▲에 납부하지 않는 등

21) 5백만 원 초과 2천 2백만 원 이하의 경우 중앙구매(계약, 수의계약 가능)
2천 2백만 원 초과 5천 5백만 원 이하는 공개견적 전자입찰(*** G2B 소액수의)
5천 5백만 원 초과 시 경쟁입찰(***)

[표 1]과 같이 2020. 1.부터 2023. 11. 감사일 현재까지 수주받은 연구과제 258개 과제 중 186개 연구과제에서 간접비 305,361천 원을 납부하지 않아 전북대학교 ▲회계 세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표 1] AD 과제 간접비 재산정 현황

(단위: 천 원)

위탁연구개발비포함연구과제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간접비 재산정액 (F=E×20%)
연도	과제수	연구비총액	당초 계상액 (A)	재료비로 변경 집행(B)	최종 계상액 (C=A-B)	위탁 연구개발비 인정액* (D)	불인정 위탁연구 개발비** (E=C-D)		
							건수	금액	
2020	-	-	-	-	-	-	-	-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합계	258	18,076,125	3,572,046	501,240	3,070,806	1,544,000	186	1,526,806	305,361

* 인정 위탁연구개발비: 구조설계위탁연구개발비 및 부대비용(협력업무비 등)

** 불인정 위탁연구개발비: c 제작비

한편, 위 AD는 위탁연구개발비와 재료비 일부를 집행하면서 위탁연구개발 기관 등으로 공동연구원인 AE가 대표인 ▶▶를 지정하는 등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들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표 2]와 같이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표 2] 참여연구원과 관련 있는 업체와 위탁연구개발비 등 계약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과제연도	업체명	연구 책임자	건수	공급가액	부가세	실지금액	비고
2020 ~2023. 11. 현재	-	AD	-	-	-	-	참여연구원 - 사내이사
	-	AD	-	-	-	-	참여연구원 - 대표이사 참여연구원 - 사내이사
	▶▶	AD	-	-	-	-	공동연구원 AE 창업회사
	-	AD	-	-	-	-	공동연구원 AE 사내이사 AE의 배우자 대표
소 계			359	1,966,396	196,640	2,163,035	

나. 연구비 중앙구매 절차 위반

위 AD는 중앙구매 대상인 5백만 원을 초과하는 ㄷ을 재료가 아닌 위탁연구 개발비 비목으로 편성하여 [표 3]과 같이 ▲으로 하여금 본인이 위탁연구개발기관 으로 지정한 업체와 101건 1,206,602천 원을 계약·집행토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공개견적 전자입찰,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구비 중앙구매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5백만 원 초과 ㄷ제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 현황

(단위: 건, 천 원)

과제연도	업체명	책임자	금액기준	건수	공급가액	부가세	실지금액	비고
2020 -2023. 11. 현재	-	AD	5백만 원 초과 - 22백만 원 이하	-	-	-	-	
			22백만 원 초과 - 55백만 원 이하	-	-	-	-	
	-	AD	5백만 원 초과 - 22백만 원 이하	-	-	-	-	
			22백만 원 초과 - 55백만 원 이하	-	-	-	-	
	기타	AD	5백만 원 초과 - 22백만 원 이하	-	-	-	-	4개 기관 5건
			22백만 원 초과 - 55백만 원 이하	-	-	-	-	
합 계				101	1,096,911	109,691	1,206,602	

다. 시설 사용료 미납부

한편, 위 AD는 2020. 1. 9.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위한 ▲ ● 기자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2020. 1.부터 2023. 11. 감사일 현재까지 ●을 통한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표 4]와 같이 ● 기자재를 179회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표 4] ● 용역과제 관련 ▲ 기자재 사용 현황

(단위: 건)

년도	ㄹ	ㅁ	ㅂ	ㅅ	합계
2020	-	-	-	-	43
2021	-	-	-	-	46
2022	-	-	-	-	44
2023	-	-	-	-	46
총 합계					179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간접비 과소 납부 관련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 직접비/마. 위탁연구개발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구조설계 용역은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 ㄷ제작비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재료비에 해당되므로 미징수 간접비 305,361천 원을 연구책임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차 30백만 원 징수 완료, 2024. 12. 11.)

한편, 전북대학교는 ● 관련 감사일 이후 진행 중인 용역과제에 대해 연구계획서 상 ㄷ제작비를 위탁연구개발비 비목에서 재료비 비목으로 변경하였고, 향후 ● 관련 용역과제에서 ㄷ제작비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재료비 비목에 편성하여 간접비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마. 위탁연구 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고, ● 구조설계의 경우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 ㄷ제작비는 미상연도부터 관행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개발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온 점, AD는 금번 감사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간접비 손실금 305,361천 원을 납부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점은 처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비 중앙구매 절차 위반 관련

① 관계기관 의견

연구비 중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집행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과제 협약체결을 요청하면 ▲은 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AD는 관행적으로 ▲에 ㄷ제작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을 요청함에 따라 ▲은 ㄷ제작비가 중앙구매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그간 관행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 집행 시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과제 협약체결을 요청하면 ▲은 그에 따라 협약 절차를 이행한 점은 처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설 사용료 미납부 관련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 ▲은 공과대학 내 설치된 ▲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시 고려하지 않았으며 추후 용역과제부터는 전북대학교 ● 장치 사용료 징수 부서인 ●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과 사용료 산정액은 소관부서인 ●와 협의하여 ●장치의 규모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 내 설치된 ▲ 사용료 건물은 연도미상부터 관행적으로 관리기관 부재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가 미징수된 점, 금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점은 처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2020. 1.부터 2023.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연구개발비가 포함된 258개 ● 관련 용역과제에서 연구재료비인 ㄷ제작비를 간접비 산정 시 제외되는 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회계에 대해 간접비 세입 305,361천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손실 초래에 상응하는 305,361천 원을 AD 등 참여 연구자들의 용역수당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5백만 원이 초과되는 ㄷ제작비를 재료비가 아닌 위탁연구개발비 비목으로 편성하여 ▲으로 하여금 연구책임자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들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계약·집행토록 함으로써 일정 금액에 따른 단계적 집행절차인 수의계약, 공개견적 전자입찰,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는 등 연구비 중앙구매 절차를 결과적으로 위반하였다.

따라서, AD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차.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 관련 용역과제 연구재료비(재료 구입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 간접비를 과소 납부하고, 연구비 중앙구매 절차를 위반한 AD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징계)
- ② 재료비에 해당되는 ㄷ제작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계상함으로써 덜 납부한 간접비 305,361천 원을 관련자에게 환수하여 ▲회계로 세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시정)
- ③ ▲에서는 연구비 집행 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협약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 ④ ▲ 및 ▼에서는 ▲ ● 고가기자재를 활용하여 외부 연구(용역)과제 수행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참고]

5백만 원 초과 ㄷ제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 세부 현황(표3 관련)

(단위: 천 원)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비 총액	■	우우	궤궤	ㄱㄱ	ㄴㄴ	ㄷㄷ	합계
2020	-	44,000	-	-	-	10,000	-	-	10,000
2020	-	60,000	-	12,000	-	-	-	-	12,000
2020	-	77,000	-	6,000	-	-	-	-	6,000
2020	-	154,000	-	-	-	-	10,000	-	10,000
2020	-	93,500	-	10,000	-	-	-	-	10,000
2020	-	44,000	-	10,000	-	-	-	-	10,000
2020	-	99,000	-	30,000	-	-	-	-	30,000
2020	-	95,700	-	20,000	-	-	-	-	20,000
2020	-	46,200	-	10,000	-	-	-	-	10,000
2020	-	33,000	-	10,000	-	-	-	-	10,000
2020	-	93,500	-	10,000	-	-	-	-	10,000
2020	-	55,000	-	10,000	-	-	-	-	10,000
2020	-	33,000	-	6,000	-	-	-	-	6,000
2020	-	55,000	-	10,000	-	-	-	-	10,000
2020	-	60,500	-	13,000	-	-	-	-	13,000
2020	-	60,500	-	10,000	-	-	-	-	10,000
2020	-	38,500	-	6,000	-	-	-	-	6,000
2020	-	49,500	-	6,000	-	-	-	-	6,000
2020	-	97,900	-	10,000	-	-	-	-	10,000
2020	-	110,000	-	10,000	-	-	-	-	10,000
2020	-	196,900	-	10,000	-	-	-	-	10,000
2020	-	41,800	-	10,000	-	-	-	-	10,000
2020	-	41,800	-	6,000	-	-	-	-	6,000
2020	-	169,400	-	10,000	-	-	-	-	10,000
2020	-	187,000	-	10,000	-	-	-	-	10,000
2020	-	30,800	-	6,000	-	-	-	-	6,000
2020	-	71,500	-	10,000	-	-	-	-	10,000
2020	-	38,500	-	6,000	-	-	-	-	6,000
2020	-	33,000	-	6,000	-	-	-	-	6,000
2020	-	46,200	-	9,000	-	-	-	-	9,000
2020	-	27,500	-	6,000	-	-	-	-	6,000
2020	-	205,700	-	23,000	-	-	-	-	23,000
2020	-	57,200	-	9,000	-	-	-	-	9,000
2020	-	99,000	-	20,000	-	-	-	-	20,000
2020	-	130,000	-	10,000	-	-	-	-	10,000
2020	-	55,000	-	10,000	-	-	-	-	10,000
2020	-	53,900	-	-	-	-	-	10,000	10,000
2020	-	128,150	-	10,000	-	-	-	-	10,000
2020	-	44,000	-	9,000	-	-	-	-	9,000
2020	-	55,000	-	10,000	-	-	-	-	10,000
2021	-	71,500	-	10,000	-	-	-	-	10,000
2020	-	55,000	-	10,000	-	-	-	-	10,000
2021	-	99,000	-	4,800	5,111	-	-	-	9,911
2020	-	82,500	-	-	-	-	-	10,000	10,000
2021	-	49,500	-	6,000	-	-	-	-	6,000
2020	-	104,500	-	10,000	-	-	-	-	10,000
2020	-	132,000	-	10,000	-	-	-	-	10,000
2021	-	49,500	-	10,000	-	-	-	-	10,000
2021	-	41,800	-	6,000	-	-	-	-	6,000
2021	-	66,000	-	10,000	-	-	-	-	10,000
2021	-	121,000	-	10,000	-	-	-	-	10,000
2021	-	44,000	-	6,000	-	-	-	-	6,000
2021	-	60,500	-	10,000	-	-	-	-	10,000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비 총액	■	우우	88	JJ	JJ	JJ	합계
2021	-	77,000	-	10,000	-	-	-	-	10,000
2021	-	77,000	-	10,000	-	-	-	-	10,000
2021	-	44,000	-	9,000	-	-	-	-	9,000
2021	-	94,600	-	14,500	-	-	-	-	14,500
2021	-	42,900	-	10,000	-	-	-	-	10,000
2021	-	122,100	-	28,000	-	-	-	-	28,000
2021	-	82,500	-	10,000	-	-	-	-	10,000
2021	-	38,500	-	6,000	-	-	-	-	6,000
2021	-	136,400	-	10,000	-	-	-	-	10,000
2021	-	69,300	-	10,000	-	-	-	-	10,000
2021	-	38,500	-	6,000	-	-	-	-	6,000
2021	-	60,500	-	10,000	-	-	-	-	10,000
2021	-	66,000	-	10,000	-	-	-	-	10,000
2021	-	66,000	-	10,000	-	-	-	-	10,000
2021	-	40,700	-	6,000	-	-	-	-	6,000
2021	-	93,500	-	10,000	-	-	-	-	10,000
2021	-	183,700	-	10,000	-	-	-	-	10,000
2021	-	96,800	-	10,000	-	-	-	-	10,000
2021	-	198,000	-	10,000	-	-	-	-	10,000
2021	-	60,500	-	11,000	-	-	-	-	11,000
2020	-	90,000	12,000	10,000	-	-	-	-	22,000
2022	-	66,000	6,000	5,000	-	-	-	-	11,000
2022	-	60,500	-	10,000	-	-	-	-	10,000
2022	-	137,500	10,000	-	-	-	-	-	10,000
2022	-	101,200	20,000	-	-	-	-	-	20,000
2022	-	231,000	-	50,000	-	-	-	-	50,000
2022	-	61,600	-	10,000	-	-	-	-	10,000
2022	-	93,500	-	24,000	-	-	-	-	24,000
2022	-	64,900	-	14,000	-	-	-	-	14,000
2022	-	73,700	-	10,000	-	-	-	-	10,000
2022	-	99,000	5,000	12,000	-	-	-	-	17,000
2022	-	68,750	9,500	-	-	-	-	-	9,500
2022	-	121,000	10,000	-	-	-	-	-	10,000
2022	-	74,800	10,000	-	-	-	-	-	10,000
2022	-	104,500	-	8,000	-	-	-	-	8,000
2022	-	71,500	-	9,000	-	-	-	-	9,000
2022	-	49,500	10,000	-	-	-	-	-	10,000
2022	-	77,000	-	16,000	-	-	-	-	16,000
2023	-	49,500	11,000	-	-	-	-	-	11,000
2023	-	69,300	13,000	-	-	-	-	-	13,000
2023	-	148,500	15,000	-	-	-	-	-	15,000
2023	-	57,200	12,000	-	-	-	-	-	12,000
2022	-	92,400	8,000	-	-	-	-	-	8,000
2023	-	121,000	-	20,000	-	-	-	-	20,000
합계		7,969,261	151,500 (14건)	900,300 (82건)	5,111 (1건)	10,000 (1건)	10,000 (1건)	20,000 (2건)	1,096,911 (101건)

교 육 부

기관경고·시정·통보

제 목 간접비 지출 권한이 없는 단과대학의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 &을 두어 연구비 중앙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학칙」 제9조 및 제10조, 「전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27조에 따라 전북대학교 ▲는 하부조직으로 ▽, ▽를 두어 ▽에서 연구 학술·진흥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단장은 ▲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에는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지출원을 두되,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 & ■장은 연구비 회계의 지출관이 된다. 다만, 연구비 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임지출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분임)지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 간접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간접비는 연구수행에 따른 공통 경비로써 연구시설의 유지 및 보수비, 공공요금 등, 연구비 중앙관리 경비로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 연구 결과 확산에 필요한 경비,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회계처리규칙」 제17조 및 [별표 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 따르면 ▲회계의 운영외수익은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기타의 운영외수익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 ▲과 ▲는 전북대학교 ▲ 간접비 집행 시 ▲장이 임명한 (분임)지출원을 통해 지출하여야 하고, ▲ 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비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은 ▲회계의 운영외수익으로써 ▲회계로 세입 조치되어야 하며, ▲회계 간접비는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전북대학교 ▲은 「전북대학교 간접비 계상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2020년 이전부터 간접비를 20% 이상 납부한 연구과제(정률계상과제 제외)에 대해 일정 금액을 “○ 사업”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경비로 지원하였다.

▲는 2020년의 경우 ▲ 간접비 재원 동 사업비에서 ▲ 명의로 개설된 부기명 b 계좌로 600천 원을 ▲으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하여 ▲회계 (분임)지출원이 아닌 단과대학 ■장이 집행하는 등 [표 1] 및 [표 2]와 같이 2021회계연도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기명(☎ 등)이 다른 18개 ▲ 명의 계좌로 599,240천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회계 (분임)지출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단과대학 ■장이 지출결의서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471,564천 원(2023년 118,030천 원 미정산 제외)을 직접 집행하게 하였다.

[표 1] 단과대학별 ○사업비 입금계좌 현황

순	대학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부기명)	비고
1	☞	-	-	전북대학교▲(☞)	
2	-	-	-	전북대학교▲(-)	
3	-	-	-	전북대학교▲(-)	
4	-	-	-	전북대학교▲(-)	
5	-	-	-	전북대학교▲(-)	
6	-	-	-	전북대학교▲(-)	
7	-	-	-	전북대학교▲(-)	
8	-	-	-	전북대학교▲(-)	
9	-	-	-	전북대학교▲(-)	
10	-	-	-	전북대학교▲(-)	
11	-	-	-	전북대학교▲(-)	
12	-	-	-	전북대학교▲(-)	
13	-	-	-	전북대학교▲(-)	
14	-	-	-	전북대학교▲(-)	
15	-	-	-	전북대학교▲(-)	
16	-	-	-	전북대학교▲(-)	
17	-	-	-	전북대학교▲(-)	

[표 2] 자율연구 학술진흥사업비 집행 현황 총괄표(2020. 3.~2023. 10.)

(단위: 천 원)

연번	단과대학	지급액	집행액	잔액	이자	반납액	비고
1	b	3,730	2,685	5	430	435	
2	-	200,250	161,667	953	18,030	18,983	
3	-	2,050	1,031	259	150	409	
	-	300	-	300	20	320	
4	-	79,160	65,977	3	6,920	6,923	
5	-	9,500	6,850	0	400	400	
6	-	19,800	13,935	655	1,950	2,605	
7	-	15,010	11,150	-	990	990	
8	-	12,440	8,918	132	1,190	1,322	
9	-	10,420	8,406	114	870	984	
10	-	41,320	35,202	148	4,500	4,648	
11	-	10,650	6,567	113	1,340	1,453	
12	-	63,720	56,047	5,833	5,670	11,503	
13	-	19,260	6,000	-	690	690	
14	-	23,470	18,336	14	2,170	2,184	
15	-	47,650	37,422	138	4,070	4,208	
16	-	18,680	14,113	67	1,150	1,217	
17	-	21,830	17,258	912	1,590	2,502	
합계		599,240	471,564	9,646	52,130	61,776	

특히, [별표 1] “단과대학별 자율연구 학술·진흥사업비 세목별 집행 현황”과 같이 ㉞은 2022년의 경우 입금된 2,170천 원을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이 아닌 회의비(1,012천 원), 여비(570천 원), 사무용품비(588천 원)로 전액 집행하는 등 [표 3]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액 471,564천 원 중 272,185천 원(57.7%)을 자율연구·학술진흥 사업비 필수항목(신규 연구과제 발굴 수주 지원, 연구소 지원 등)과 선택항목(학술대회 개최경비, 연구환경개선비 등)이 아닌 회의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표 3] 단과대학별 ㉞사업비 세목별 집행 현황 총괄표(2020~2022년)

(단위: 천 원)

순	단과대학	지급액	회의비등 (인건비, 회의비, 여비, 행사비, 자문료,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연구시설·장비비등 (학회비, 도서, 재료비 등)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b	2,690	2,445	91.1%	240	8.9%	2,685	100%
2	-	162,620	77,637	48.0%	84,031	52.0%	161,667	100%
3	-	1,290	600	58.2%	431	41.8%	1,031	100%
4	-	65,980	32,192	48.8%	33,786	51.2%	65,977	100%
5	-	6,850	6,630	96.8%	219	3.2%	6,850	100%
6	-	14,590	11,448	82.2%	2,487	17.8%	13,935	100%
7	-	11,150	8,315	74.6%	2,835	25.4%	11,150	100%
8	-	9,050	5,975	67.0%	2,943	33.0%	8,918	100%
9	-	8,520	7,863	93.5%	543	6.5%	8,406	100%
10	-	35,350	22,132	62.9%	13,070	37.1%	35,202	100%
11	-	6,680	3,086	47.0%	3,481	53.0%	6,567	100%
12	-	6,000	5,021	83.7%	979	16.3%	6,000	100%
13	-	61,880	28,720	51.2%	27,327	48.8%	56,047	100%
14	-	18,350	12,952	70.6%	5,384	29.4%	18,336	100%
15	-	37,560	21,992	58.8%	15,430	41.2%	37,422	100%
16	-	14,180	11,919	84.5%	2,194	15.5%	14,113	100%
17	-	18,170	13,258	76.8%	4,000	23.2%	17,258	100%
18	-	300	-	-	-	-	-	100%
합계		481,210	272,185	57.7%	199,380	42.3%	471,564	100%

또한, ▲ 및 △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교원 1,060명에게 1인당 2,000천 원씩 합계 2,120,000천 원을 배정하여 ㉞으로 집행하게 하는 등 [별표 2] “㉞ 집행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연인원 3,803명에게 합계 5,884,000천 원을 집행하였다.

특히, 위 ㄱ 집행액 중 2020회계연도에는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할 회의비 등 923,528천 원을 개인카드 사용분을 인정하여 집행하는 등 [표 4]와 같이 3,015,949천 원을 ▲회계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분을 인정하여 집행하였다.

[표 4] ㄱ 집행내역 중 법인카드 미사용 현황(2020년~2023년 11월)

(단위: 천 원)

연도별	세목별 집행액					
	논문게재(심사)료	도서	재료비소모품	회의비	기타	계
2020	34,577	62,561	301,642	371,521	153,227	923,528
2021	17,627	54,203	190,417	408,311	130,617	801,175
2022	12,500	36,316	169,847	508,914	146,632	874,209
2023년 11월까지	5,696	17,874	48,754	269,376	75,337	417,037
합계	70,400	170,954	710,660	1,558,122	505,813	3,015,949

그 결과 ▲은 [표 5]와 같이 포인트 환급 예상액 11,690천 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였다.

[표 5] 환급받지 못한 포인트 예상액 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시 포인트 지급액			비고
	회의비	포인트 지급률	포인트 지급액(예상)	
2020	371,521	1.0%	3,715	법인카드 포인트 지급률이 2021.6.30.이후 0.5%, 이전 1.0% 이나 카드사용일 확인 불가로 2021 회계연도까지 1.0% 적용함
2021	408,311	1.0%	4,083	
2022	508,914	0.5%	2,545	
2023년 11월까지	269,376	0.5%	1,347	
합계	1,558,122		11,690	

한편, ▲회계 간접비로 수행하는 사업비를 중앙관리하지 않아 [별표 3] “연구비와 ▲회계 간접비(ㄷ) 여비 중복 지급 현황”과 같이 9명의 교원에게 11건의 여비 합계 1,052,790원을 중복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2012년에 단과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회계 집행이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을 인식하고 집행정지하였으며 잔액을 ▲회계로 회수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로 전환하였고,

즈은 교수별 ㅅ사업 추진의 편의성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고, 도입 초기 법인카드 사용의 한계로 개인카드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2024학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원의 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비로 지원하는 ㅋ사업을 개편하여 제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에 대해 간접비 등 연구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중복 지급된 여비 1,052,79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며, (시정)
- ③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추진한 간접비 사업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제도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단과대학별 자율연구 학술진흥사업비 세목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순	단과대학	전임 교원(명)	지급액(원)	회의비등 (인건비, 회의비, 여비, 행사비, 자료료,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연구시설, 장비비등 (학회비, 도서, 재료비 등)		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0	1	☞	12	600	535	89.9%	60	10.1%	595
	2	-	238	40,760	21,986	54.0%	18,740	46.0%	40,726
	3	-	-	-	-	-	-	-	-
	4	-	71	17,300	10,617	61.4%	6,683	38.6%	17,300
	5	-	36	2,030	1,960	96.6%	70	3.4%	2,030
	6	-	70	4,000	3,197	91.6%	294	8.4%	3,491
	7	-	51	3,970	3,455	87.0%	515	13.0%	3,970
	8	-	45	2,320	2,300	100.0%	-	0.0%	2,300
	9	-	20	2,660	2,003	78.7%	543	21.3%	2,546
	10	-	34	10,170	5,155	51.3%	4,900	48.7%	10,055
	11	-	-	-	-	-	-	-	-
	12	-	25	1,260	756	60.0%	504	40.0%	1,260
	13	-	149	15,520	7,420	56.1%	5,800	43.9%	13,220
	14	-	85	6,650	5,154	77.5%	1,496	22.5%	6,650
	15	-	92	11,410	6,405	56.2%	5,001	43.8%	11,406
	16	-	40	3,070	2,755	90.2%	300	9.8%	3,055
	17	-	20	3,420	2,620	76.6%	800	23.4%	3,420
	18	-	6	300	-	-	-	-	-
2021	소계		994	125,440	76,318	62.5%	45,705	37.5%	122,023
	1	☞	14	1,070	970	90.7%	100	9.3%	1,070
	2	-	238	63,560	23,768	37.8%	39,108	62.2%	62,876
	3	-	7	530	220	77.4%	64	22.6%	284
	4	-	72	25,380	5,069	20.0%	20,308	80.0%	25,377
	5	-	34	2,770	2,692	97.2%	78	2.8%	2,770
	6	-	68	6,050	4,481	75.0%	1,494	25.0%	5,975
	7	-	52	3,980	2,900	72.9%	1,080	27.1%	3,980
	8	-	47	3,600	2,300	65.7%	1,200	34.3%	3,500
	9	-	20	3,690	3,690	100.0%	-	0.0%	3,690
	10	-	35	11,520	7,496	65.1%	4,010	34.9%	11,506
	11	-	9	1,470	789	58.1%	570	41.9%	1,359
	12	-	26	2,750	2,475	90.0%	275	10.0%	2,750
	13	-	147	28,630	13,000	48.9%	13,609	51.1%	26,609
	14	-	85	6,510	2,610	40.2%	3,888	59.8%	6,498
	15	-	93	15,860	7,221	45.9%	8,524	54.1%	15,745
	16	-	40	6,040	4,844	80.9%	1,144	19.1%	5,988
	17	-	19	9,350	7,350	78.6%	2,000	21.4%	9,350
18	-	-	-	-	-	-	-	-	
소계		1,006	192,760	91,876	48.5%	97,452	51.5%	189,328	

연도	순	단과대학	전임 교원(명)	지급액(원)	회의비등 (인건비, 회의비, 여비, 행사비, 자료료,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연구시설, 장비비등 (학회비, 도서, 재료비 등)		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2	1	☞	16	1,020	940	92.2%	80	7.8%	1,020
	2	-	236	58,300	31,883	54.9%	26,182	45.1%	58,065
	3	-	12	760	380	50.9%	367	49.1%	747
	4	-	76	23,300	16,505	70.8%	6,795	29.2%	23,300
	5	-	32	2,050	1,978	96.5%	72	3.5%	2,050
	6	-	65	4,540	3,770	84.3%	700	15.7%	4,470
	7	-	50	3,200	1,960	61.3%	1,240	38.8%	3,200
	8	-	49	3,130	1,375	44.1%	1,743	55.9%	3,118
	9	-	23	2,170	2,170	100.0%	-	0.0%	2,170
	10	-	35	13,660	9,482	69.5%	4,160	30.5%	13,642
	11	-	15	5,210	2,297	44.1%	2,911	55.9%	5,208
	12	-	24	1,990	1,790	89.9%	200	10.1%	1,990
	13	-	149	17,730	8,300	51.2%	7,918	48.8%	16,218
	14	-	81	5,190	5,188	100.0%	-	0.0%	5,188
	15	-	93	10,290	8,366	81.5%	1,904	18.5%	10,271
	16	-	41	5,070	4,320	85.2%	750	14.8%	5,070
	17	-	21	5,400	3,288	73.3%	1,200	26.7%	4,488
	18	-	-	-	-	-	-	-	-
소계			1,018	163,010	103,991	64.9%	56,222	35.1%	160,213
3년간 ('20~'22) 단과 대학별 합계	1	☞	-	2,690	2,445	91.1%	240	8.9%	2,685
	2	-		162,620	77,637	48.0%	84,031	52.0%	161,667
	3	-		1,290	600	58.2%	431	41.8%	1,031
	4	-		65,980	32,192	48.8%	33,786	51.2%	65,977
	5	-		6,850	6,630	96.8%	219	3.2%	6,850
	6	-		14,590	11,448	82.2%	2,487	17.8%	13,935
	7	-		11,150	8,315	74.6%	2,835	25.4%	11,150
	8	-		9,050	5,975	67.0%	2,943	33.0%	8,918
	9	-		8,520	7,863	93.5%	543	6.5%	8,406
	10	-		35,350	22,132	62.9%	13,070	37.1%	35,202
	11	-		6,680	3,086	47.0%	3,481	53.0%	6,567
	12	-		6,000	5,021	83.7%	979	16.3%	6,000
	13	-		61,880	28,720	51.2%	27,327	48.8%	56,047
	14	-		18,350	12,952	70.6%	5,384	29.4%	18,336
	15	-		37,560	21,992	58.8%	15,430	41.2%	37,422
	16	-		14,180	11,919	84.5%	2,194	15.5%	14,113
	17	-		18,170	13,258	76.8%	4,000	23.2%	17,258
	18	-		300	-	-	-	-	-
합계			-	481,210	272,185	57.7%	199,380	42.3%	471,564

[별표 2]

지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단과대	2020년						2021년					
	인원	지원금액 (기본100+코 로나100)	신청금액	잔액	이월금액	불용액	인원수	지원금액 (기본100+ 이월금)	신청금액	잔액	이월 금액	불용액
총	15	30,000	22,839	6,661	5,821	840	15	20,194	19,317	877		
-	231	462,000	336,039	120,961	108,533	12,429	224	321,658	309,965	11,693		
-	10	20,000	13,187	5,813	4,813	1,000	10	13,813	13,711	102		
-	74	148,000	110,274	36,726	34,693	2,033	73	104,944	100,197	4,747		
-	2	4,000	3,003	997	997		2	2,997	2,994	4		
-							1	1,000	500	500		
-	14	28,000	24,352	3,648	3,648		17	21,016	20,456	560		
-	34	68,000	44,896	23,104	19,382	3,722	32	49,382	46,772	2,611		
-	5	10,000	7,522	2,478	2,478		5	7,478	7,478			
-	2	4,000	3,632	368	368							
-	72	144,000	111,441	32,059	29,945	2,114	68	93,945	93,618	327		
-	53	106,000	83,872	21,628	20,741	886	49	68,741	64,802	3,939		
-	48	96,000	78,397	16,103	16,103		50	65,103	62,731	2,372		
-	21	42,000	31,354	10,146	10,146		23	32,146	30,524	1,622		
-	35	70,000	60,409	9,091	9,089	3	35	44,089	43,677	411		
-							2	2,000	1,000	1,000		
-	9	18,000	11,376	6,124	6,109	15	12	18,109	17,535	573		
-	11	22,000	15,830	4,670	3,670	1,000	11	13,669	12,882	787		
-	26	52,000	40,030	11,970	7,970	4,000	21	28,700	27,154	1,546		
-	10	20,000	15,325	4,675	3,995	680	9	12,995	12,437	558		
-	148	296,000	218,757	75,743	64,664	11,079	137	191,713	185,633	6,080		
-	82	164,000	132,257	29,243	27,007	2,236	79	103,999	99,557	4,443		
-	92	184,000	140,568	40,932	36,384	4,549	90	122,717	112,371	10,346		
-	40	80,000	57,614	22,386	20,123	2,263	37	55,435	53,879	1,556		
-	6	12,000	7,411	4,089	4,089		6	10,089	8,935	1,154		
-	20	40,000	34,149	5,851	5,084	767	19	21,946	21,382	564		
전체	1060	2,120,000	1,604,534	495,466	445,850	49,616	1027	1,427,878	1,369,506	58,373		
실지금액		2,120,000						1,027,000				
단과대	2022년						2023년 10월 현재					
	인원	지원금액 (기본100+코 로나100)	신청금액	잔액	이월금액	불용액	인원수	지원금액 (기본100+ 이월금)	신청금액	잔액	이월 금액	불용액
총	16	32,000	20,283	11,717	11,595	122	12	21,028	14,898	6,130		
-	220	440,000	314,292	125,708	121,572	4,136	155	233,951	152,421	81,530		
-	11	22,000	17,954	4,046	4,046		6	7,848	5,738	2,110		
-	71	142,000	100,525	41,475	41,019	456	50	77,127	47,223	29,904		
-	2	4,000	2,075	1,925	1,925		2	3,925	2,744	1,181		
-	2	4,000	2,901	1,099	1,099		3	4,099	2,574	1,525		
-	17	34,000	26,130	7,870	7,864	6	15	21,791	14,421	7,370		
-	28	56,000	35,893	20,107	19,054	1,053	17	28,922	16,202	12,719		
-	4	8,000	5,020	2,980	2,980		1	1,982	1,721	261		
-												
-	66	132,000	90,611	41,389	39,848	1,542	51	77,880	50,496	27,384		
-	50	100,000	63,840	36,160	35,585	575	35	57,350	36,422	20,928		
-	51	102,000	68,115	33,885	31,540	2,345	36	58,598	34,968	23,630		
-	24	48,000	32,438	15,562	15,281	282	17	27,845	17,186	10,659		
-	35	70,000	55,308	14,692	13,534	1,158	25	32,612	23,292	9,320		
-	2	4,000	2,994	1,006	1,000	6	2	3,000	2,116	884		
-	16	32,000	21,268	10,732	10,351	381	14	22,038	16,619	5,419		
-	11	22,000	12,988	9,012	8,930	81	10	14,584	9,578	5,005		
-	22	44,000	35,847	8,153	7,967	186	8	10,259	8,475	1,784		
-	10	20,000	16,336	3,664	3,664		8	11,649	8,387	3,262		
-	139	278,000	185,897	92,103	88,975	3,128	71	115,831	70,165	45,666		
-	75	150,000	110,529	39,471	39,257	213	56	83,260	49,053	34,208		
-	86	172,000	117,674	54,326	51,684	2,642	60	93,992	63,947	30,044		
-	39	78,000	57,947	20,053	20,024	30	27	42,289	31,561	10,728		
-	4	8,000	5,579	2,422	2,422		1	1,000	872	129		
-	20	40,000	35,433	4,567	4,565	2	13	16,145	14,032	2,113		
전체	1021	2,042,000	1,437,877	604,123	585,779	18,344	695	1,069,002	695,110	373,893		
실지금액		2,042,000						695,000				

[별표 3]

연구비와 ▲회계 간접비(ㄨ) 여비 중복 지급 현황

□ 연구비 여비 지급 내역(정상)

회계	소속	직 급	성 명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시작일	종료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원)
▲ 회계 연구비	-	-	-	-	-	-	-	40,000	50,000	76,000	9,900	175,900
	-	-	-	-	-	-	-	25,000	25,000		34,400	84,400
	-	-	-	-	-	-	-	20,000	20,000		0	40,000
	-	-	-	-	-	-	-	25,000	25,000		38,800	65,946
	-	-	-	-	-	-	-	60,000	75,000	40,000	66,100	241,100
	-	-	-	-	-	-	-	20,000	25,000		37,000	82,000
	-	-	-	-	-	-	-	25,000	16,600		15,800	57,400
	-	-	-	-	-	-	-	20,000	25,000		64,500	109,000
	-	-	-	-	-	-	-	60,000	75,000	140,000	42,356	317,000
	-	-	-	-	-	-	-	20,000	25,000		30,909	75,000
	-	-	-	-	-	-	-	20,000	25,000		34,889	79,880
합계			9명	11건								1,327,626

□ 간접비 여비 지급 내역(중복)

회계	소속	직 급	성 명	세부내역	내역	출장시작	출장종료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원)
▲ 회계 간접비	-	-	-	-	-	-	-	20,000	20,000			40,000
	-	-	-	-	-	-	-	25,000	16,000		34,400	75,400
	-	-	-	-	-	-	-	20,000	20,000			40,000
	-	-	-	-	-	-	-	25,000	25,000		63,000	113,000
	-	-	-	-	-	-	-	20,000	25,000		32,560	77,560
	-	-	-	-	-	-	-	20,000	25,000		41,990	86,990
	-	-	-	-	-	-	-	10,000	10,000		17,840	37,840
	-	-	-	-	-	-	-	20,000	25,000		64,500	109,500
	-	-	-	-	-	-	-	60,000	75,000	140,000	40,470	315,470
	-	-	-	-	-	-	-	20,000	25,000		33,030	78,030
	-	-	-	-	-	-	-	20,000	25,000		34,000	79,000
합계			9명	11건								1,052,790

교 육 부

기관주의·통보

제 목	법인카드 포인트의 회계별 세입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AH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과 “전북대학교 기업카드 업무 협약(또는 신용카드 제휴 계약으로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전북대학교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이하 “AG”라 한다)를 ○○○으로부터 AH에 지급받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각 국립대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전북대학교 ▲ 정관」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20~2023학년도)」에 따르면, 총장은 재정사업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세입 조치하도록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부수적인 수익을 회계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회계과 계약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회계과 AG를 AH 회계에 지급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대학교 경비 집행 및 ▲의 연구비 집행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회계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일정 지급률(0.5~1.0% 상당)을 적용한 AG를 대학과 ▲이 아닌 AH에 지급받았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표]와 같이 대학회계와 ▲회계에 지급되어야 하는 AG 합계 158,497,013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았고,

[표] AG 세입 미조치 현황(2020~2023)

(단위: 원)

회계 구분	세입 미조치액	비고
대학회계(●)	4,055,820	AH 수입으로 처리
▲회계	154,441,193	AH 수입으로 처리
합계	158,497,013	

AH은 ●(대학회계)와 ▲에 2020년부터 지급했어야 하는 AG 합계 158,497,013원을 해당 회계로 지급하지 않고, AH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금고 사무에 관한 금고 약정을 회계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코러스와 자체프로그램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회계과 신용카드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G 수입금은 AH에 세입 조치된 후 각 기관 및 부서로 재분배되는데,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연구비 카드 포인트를 공익법인 목적사업 수행(시설확충, 연구비 지급 등)을 위해 AH 기부금으로 처리했으며, 기부금 처리된 AG는 2020년 38,671,771원을 대학문화활동 및 홍보로, 2021년 49,450,722원을 연구활동지원금으로, 2022년 37,088,190원과 2023년 33,286,330원을 AH 회계의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각 카드별 발생한 포인트는 사용 기관별로 포인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20 ~ 2023년에 AH으로 수입 처리된 연구비카드 포인트는 AH 이사회와 감독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회계)에 입금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주의)**
- ② AH에 세입 조치 된 후 대학 및 ▲회계에 미지급 처리된 대학 법인카드 포인트 (총 158,497,013원)를 해당 회계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AG 수입 및 지급 현황

(단위: 원)

입금 연월일	카드구분	수입액	지출 연월일	지급 기관(부서)	지급액	비고
2020-05-14	-	23,642,503	2020-05-20	-	23,642,503	●
	-	10,371,322		-	10,371,322	▲
	연구비카드	38,671,771		AH	38,671,771	▲
	-	3,048,973		-	3,048,973	●
	-	364,445		-	364,445	●
	-	1,363,866		-	1,363,866	●
	소계	77,462,880		소계	77,462,880	
2021-05-04	-	20,500,983	2021-05-07	-	20,500,983	●
	-	8,986,797		-	8,986,797	▲
	연구비카드	49,450,722		AH	49,450,722	▲
	-	2,131,735		-	2,131,735	●
	-	605,386		-	605,386	●
	-	1,046,237		-	1,046,237	●
	소계	82,721,860		소계	82,721,860	
2022-05-20	-	11,205,160	2022-05-25	-	11,205,160	●
	-	2,443,900		-	2,443,900	▲
	연구비카드	37,088,190		AH	2,078,560	●
	-	1,957,490		-	35,009,630	▲
	-	492,710		-	1,957,490	●
	-	1,101,360		-	492,710	●
	-	2,331,580		-	1,101,360	●
	소계	56,620,390		소계	56,620,390	
2023-05-25	-	20,582,570	2023-05-26	-	20,582,570	●
	-	2,144,650		-	2,144,650	▲
	연구비카드	33,286,330		AH	1,977,260	●
	-	2,219,340		-	31,309,070	▲
	-	728,310		-	2,219,340	●
	-	2,338,010		-	728,310	●
	-	2,796,580		-	2,338,010	●
	-	1,051,220		-	2,796,580	●
	소계	65,147,010		2023-06-05	-	1,051,220
총계	281,952,140	총계	281,952,140			
합계(AH 세입 처리액, '20~'23)					4,055,820	●
					154,441,193	▲
					158,497,013	총 계

교 육 부

기관경고·시정·통보

제 목 출장 여비 중복·초과 지급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 ▲은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원²²⁾에게 ▲회계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비는 ▲ 회계에 편입하여 총장이 관리하되 ▲장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및 <별표 3>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출장비와 관련하여 [표 1], [표 2]와 같이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2) 전북대학교내 관련 규정에 의거 교원으로 인정되는 자 및 연구원을 포함하며, 소속 교수, 부교수, 퇴직교원 중 명예교수, 조교수, 강사, 비전임교원, 연구(보조)자가 있다.

[표 1] 여비지급 기준표

직급(신분)	여비지급 기준	비고
교수, 부교수, 본교 퇴직교원 중 명예교수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여비 지급구분표 제1호 “라” 목	다만,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가” 목 내지 “다” 목의 적용을 받는 보직교수에게는 당해 목을 적용할 수 있다.
조교수, 강사, 비전임교원, 연구(보조)자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표 2] 출장신청 방법

구 분	국내출장	국외출장	비 고
연구책임자	출장신청서 (학장 또는 단장 결재)	국외여행 허가공문 (학장·총장 결재)	영수증 첨부 사후 정산 (여비산출내역서서식 11-1 첨부)
연구(보조)자	출장신청서 서식 11 (연구책임자 결재)	출장허가 (연구책임자 결재)	

또한, 「같은 지침」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요청 및 지출원인행위서를 받으면 연구비 실행예산서와 부적정 집행 사전 통제사항 <별표 5> 지출항목별 예산잔액, 항목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을 수행하는 대학교원은 같은 날의 출장에 대한 여비가 초과·중복되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에 출장여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장은 그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동일 ▲ 회계 내 여비 중복·초과 지급

전북대학교 AI 등 교원 33명은 [별표] “여비 중복·초과 수령 현황”과 같이 2020. 5.부터 2023. 11. 감사일 현재까지 같은 날에 동일 출장 건으로 여비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같은 날의 다른 출장 간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여비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출장 건 모두에 대한 여비를 신청하는 등 ▲회계에서 총 52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 합계 4,616,968원을 중복·초과하여 수령하였다.

나. 대학회계와 ▲회계에서 여비 중복 지급

전북대학교 AJ은 2023. 2. 2. “AK” 목적으로 출장을 수행하고 대학회계로부터 일비 및 식비, 교통비 합계 141,6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회계에서 동일 일자 “AL” 출장(출장지는 서울로 동일)으로 여비 합계 96,600원(교통비)을 중복으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전북대학교 ▲은 위 중복·초과 신청한 여비에 대하여 확인 없이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 ▲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원들이 제출한 ‘여비 중복수령 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여비를 중복 지급 받은 주된 사유가 착오로 인한 출장 중복 신청으로, 착오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원의 복무(출장)를 관리하는 코러스(KORUS)와 여비를 신청하는 교내 연구비 시스템의 정보 미연계로 파악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 코러스(KORUS)와 교내 연구비 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추진하여

출장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 연구비 출장 승인 건은 연구비 시스템에서 여비 1회에 한하여 신청·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연구과제 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중복·초과 지급된 여비 합계 4,713,568원을 AI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시정)**
- ③ 향후, 여비 중복·초과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여비 중복·초과 수령 현황

(단위: 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시작일	종료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	중복 사유	반납 산출금액
-	-	AI	-	-	-	-	-	20,000	16,000			36,000	중복	36,000
-	-	-	-	-	-	-	-	20,000	16,000			36,0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20,233	65,000	중복	65,000
-	-	-	-	-	-	-	-	20,000	25,000		25,001	70,0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45,0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704	10,000	중복 (관내 출장)	10,000
-	-	-	-	-	-	-	-	25,000	25,000			50,000	중복	50,000
-	-	-	-	-	-	-	-	25,000	25,000		14,627	64,626	중복	
-	-	-	-	-	-	-	-	20,000	16,600		27,100	63,7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27,100	72,100	중복	72,100
-	-	-	-	-	-	-	-	40,000	41,700	60,000	51,934	193,600	중복	193,600
-	-	-	-	-	-	-	-	40,000	41,000	60,000	73,734	214,700	중복	
-	-	-	-	-	-	-	-	20,000	20,000			40,000	중복 (일비 식비)	40,000
-	-	-	-	-	-	-	-	20,000	20,000		7,252	47,250	중복 (일비 식비)	
-	-	-	-	-	-	-	-	40,000	50,000	20,000	42,800	152,800	중복	152,800
-	-	-	-	-	-	-	-	40,000	50,000	20,000	42,800	152,800	중복	
-	-	-	-	-	-	-	-	60,000	75,000	40,000	59,500	226,200	중복	226,200
-	-	-	-	-	-	-	-	60,000	75,000	192,921	59,700	387,620	중복	
-	-	-	-	-	-	-	-	20,000	25,000		41,100	86,100	중복	86,100
-	-	-	-	-	-	-	-	20,000	25,000		41,100	86,100	중복	
-	-	-	-	-	-	-	-	40,000	50,000	20,000	23,769	125,450	중복	125,450
-	-	-	-	-	-	-	-	40,000	50,000	50,000	22,773	154,468	중복	
-	-	-	-	-	-	-	-	20,000	25,000		31,800	76,800	중복	76,800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시작일	종료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	중복 사유	반납 산출금액
				-	-	-	-	20,000	25,000		31,800	76,800	중복	
-	-	-	-	-	-	-	-	25,000	25,000		37,800	87,800	중복	87,800
				-	-	-	-	25,000	25,000		37,800	87,800	중복	
-	-	-	-	-	-	-	-	20,000				20,000	중복 (관내 출장)	
-	-	-	-	-	-	-	-	20,000	20,000			10,000	중복 (관내 출장 한도 초과)	10,000
-	-	-	-	-	-	-	-	60,000	75,000	40,000	62,431	237,430	중복	237,430
				-	-	-	-	60,000	66,666	40,000	69,781	236,440	중복	
-	-	-	-	-	-	-	-	80,000	100,000	60,000	76,741	316,730	중복 (0415 ~0416) 일비, 식비, 숙박비)	
-	-	-	-	-	-	-	-	40,000	50,000	20,000	89,760	199,750	중복 (0415 ~0416 출장 여비)	199,750
-	-	-	-	-	-	-	-	20,000	25,000		28,661	72,664	중복	
				-	-	-	-	20,000	25,000		28,661	62,636	중복	62,636
-	-	-	-	-	-	-	-	20,000	20,000		63,000	103,000	중복	103,000
				-	-	-	-	20,000	20,000		63,000	103,000	중복	
				-	-	-	-	10,000	20,000		28,505	58,500	중복	58,500
				-	-	-	-	20,000	20,000		28,661	68,000	중복	
				-	-	-	-	10,000	20,000		27,597	57,500	중복	57,500
				-	-	-	-	20,000	20,000		31,844	71,000	중복	
				-	-	-	-	10,000	20,000		31,624	61,600	중복	61,600
				-	-	-	-	20,000	20,000		38,587	78,000	중복	
				-	-	-	-	20,000	20,000		66,410	106,400	중복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시작일	종료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	중복 사유	반납 산출금액
			-	-	-	-	-	20,000	20,000		66,210	106,200	중복	106,200
			-	-	-	-	-	20,000	20,000		44,509	84,500	중복	84,500
			-	-	-	-	-	20,000	20,000		67,622	107,6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96,400	141,400	중복	141,400
			-	-	-	-	-	20,000	16,000		96,400	132,400	중복	
-	-	-	-	-	-	-	-	25,000	25,000		17,700	67,700	중복	67,700
			-	-	-	-	-	25,000	25,000		17,700	67,700	중복	
-	-	-	-	-	-	-	-	75,000	75,000		99,164	149,164	중복	99,164
			-	-	-	-	-	75,000	75,000		101,114	151,114	중복	
-	-	-	-	-	-	-	-	20,000	25,000		30,400	75,400	중복	75,400
			-	-	-	-	-	20,000	25,000		30,400	75,4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48,122	93,122	중복	
			-	-	-	-	-	20,000	25,000		48,011	93,037	중복	93,037
-	-	-	-	-	-	-	-	20,000	25,000		29,814	74,814	중복	74,814
			-	-	-	-	-	20,000	25,000		29,814	74,814	중복	
-	-	-	-	-	-	-	-	20,000	20,000		69,960	109,900	중복	109,900
			-	-	-	-	-	20,000	20,000		71,717	111,700	중복	
-	-	-	-	-	-	-	-	10,000				10,000	중복 (관내 출장 한도 초과)	10,000
			-	-	-	-	-	20,000				20,000	중복 (관내 출장)	
-	-	-	-	-	-	-	-	10,000				10,000	중복 (관내 출장 한도 초과)	10,000
			-	-	-	-	-	20,000				20,000	중복 (관내 출장)	
-	-	-	-	-	-	-	-	10,000				10,000	중복 (관내 출장)	10,000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시작일	종료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	중복 사유	반납 산출금액
													한도 초과)	
			-	-	-	-	-	20,000				20,000	중복 (관내 출장)	
			-	-	-	-	-	10,000				10,000	중복 (관내 출장 한도 초과)	10,000
			-	-	-	-	-	20,000				20,000	중복 (관내 출장)	
-	-	-	-	-	-	-	-	20,000	20,000		35,276	75,275	중복	75,275
			-	-	-	-	-	20,000	20,000		35,276	75,275	중복	
-	-	-	-	-	-	-	-	40,000	50,000	429,000	22,400	400,000	중복	
			-	-	-	-	-	40,000	50,000	200,000	22,400	250,000	중복	250,000
-	-	-	-	-	-	-	-	25,000	25,000			50,000	중복	50,000
			-	-	-	-	-	25,000	25,000			50,0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54,645	99,642	중복	
			-	-	-	-	-	20,000	25,000		54,645	99,600	중복	99,600
-	-	-	-	-	-	-	-	40,000	40,000	70,000	68,800	211,800	중복	211,800
			-	-	-	-	-	40,000	40,000	70,000	68,800	212,800	중복	
-	-	-	-	-	-	-	-	60,000	75,000	40,000	162,000	312,000	중복 (일비 6만 원)	
			-	-	-	-	-	60,000			38,954	98,954	중복 (일비 6만 원)	60,000
			-	-	-	-	-	20,000	25,000		60,200	105,200	중복	105,200
			-	-	-	-	-	20,000	25,000		60,200	96,2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45,000	중복	45,000
			-	-	-	-	-	20,000	25,000			45,0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88,400	133,400	중복	133,400
			-	-	-	-	-	20,000	25,000		88,400	133,400	중복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출장 목적	출장 장소	시작일	종료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계	중복 사유	반납 산출금액
-	-	-	-	-	-	-	-	20,000	25,000		26,440	71,440	중복	71,440
-	-	-	-	-	-	-	-	20,000	25,000		28,283	73,280	중복	
-	-	-	-	-	-	-	-	20,000	25,000		25,790	70,790	중복	70,790
-	-	-	-	-	-	-	-	20,000	25,000		27,693	72,690	중복	
-	-	-	-	-	-	-	-	20,000	25,000		89,600	134,600	중복	134,600
-	-	-	-	-	-	-	-	20,000	25,000		89,600	134,6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29,300	74,300	중복 (국외 출장 출발일 1203 일비 식비 45천 원)	45,000
-	-	-	-	-	-	-	-	20,000	25,000		33,000	78,000	중복 (국외 출장 귀국일 1209 일비 식비 45천 원)	45,000
-	-	-	-	-	-	-	-	20,000	25,000		20,274	65,000	중복	65,000
-	-	-	-	-	-	-	-	20,000	25,000		20,274	65,000	중복	
-	-	-	-	-	-	-	-	20,000	25,000		44,260	89,260	중복	
-	-	-	-	-	-	-	-	20,000	25,000		42,483	87,482	중복	87,482
-	-	-	-	-	-	-	-	20,000	25,000		47,828	92,000	중복	92,000
-	-	-	-	-	-	-	-	20,000	25,000		47,699	92,000	중복	
-	-	-	-	-	-	-	-	25,000	25,000		21,286	71,000	중복	71,000
-	-	-	-	-	-	-	-	25,000	25,000		21,040	71,000	중복	
동일 회계 내(▲회계 내) 여비 중복													계	4,616,968
-	-	AJ	대학회계	-	-	-	-	20,000	25,000		96,600	141,600	중복	
-	-	AJ	▲회계	-	-	-	-				96,600	96,600	중복 (교통비)	96,600
회계 간(대학회계 - ▲회계 간) 여비 중복													계	96,600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가설건축물 설치 시 관할청 미협의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전시, 청소용품 및 불용품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용도로 총 11개 동 248.25㎡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별표] “전북대학교 소관 관할청 미협외 가설건축물 현황”과 같이 미리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미상일부터 2023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북대학교에 9개 동, 도서관에 1개 동, 교양관에 1개 동 등 총 11개 동(248.25㎡)의 가설건축물(형태: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관할청 미협외 가설건축물은 별도 소방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체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미협외 가설건축물 총 11개 동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후 관련 법령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 전 부서에 주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교육 하고, 점검·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가설건축물을 설치(또는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관할청 협의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11개 동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전북대학교 소관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현황

연번	가설건축물 설치 위치	수량 (동)	형태	면적	용도	설치 연도 (추정)	사용자
1	-	1	경량 철골	78㎡ (지름 10m)	전시용	2010년경	-
2	-	1	컨테이너	18㎡ (3m×6m)	창고(청소용품)	2018년경	-
3	-	1	컨테이너	24㎡ (3m×8m)	창고(불용품)	2012년경	-
4		1	컨테이너	12㎡ (3m×4m)	창고(청소용품)	2012년경	
5	-	1	샌드위치 패널	2.42㎡ (1.1m×2.2m)	창고(청소용품)	2019년경	-
6	-	1	컨테이너	27㎡ (3m×9m)	창고(불용품)	1990년경	-
7		1	컨테이너	9㎡ (3m×3m)	창고(청소용품)	2010년경	-
8	-	1	조립식 목재덱	3.75㎡ (2.5m×1.5m)	쓰레기 분리수거	2010년경	-
9	-	1	금속제 패널	2.08㎡ (1.6m×1.3m)	창고(청소용품)	2005년경	-
10	-	1	샌드위치 패널	약 48㎡ (6m×8m)	창고(청소용품)	2000년경	-
11	-	1	컨테이너	24㎡ (3m×8m)	창고(청소용품)	2005년경	-
합계		총 11동		설치면적 총 248.25㎡			

교 육 부

경고·주의·통보

제 목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점검 기록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저압 전기설비, 예비 발전설비는 반기 단위로, 고압 전기설비, 계전기 및 차단기 등은 연차 단위로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직무 고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점검 실시 내용, 점검의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직무 고시」 제9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유지·운영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보유한 계측장비를 주기적(권장: 1년)으로 교정하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 전기안전관리자는 저압 전기설비, 예비 발전설비는 반기 단위로, 고압 전기설비, 계전기 및 차단기 등은 연차 단위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및 보존(4년)하고 있어야 했다. 또한, 전기설비 계측장비를 주기적(권장: 1년)으로 교정하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북대학교 전기안전관리자는 [표 1]과 같이 2020. 1. 1.부터 2023. 12. 감사일 현재까지 전기설비 점검계획과 달리 * 등 5곳에 대해 총 40회 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등 3곳에 대해 총 12회 연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 등 4곳의 점검기록 36건(일부 미비 포함)을 보존하지 않았다.

[표 1] 전기설비 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보존 현황

[단위: 회,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보존 합계			담당자
	반기 점검	연차 점검	기록 보존	반기 점검	연차 점검	기록 보존	반기 점검	연차 점검	기록 보존	반기 점검	연차 점검	기록 보존	반기 점검	연차 점검	기록 보존	
*	0	1	3	0	1	3	0	1	3	0	1	3	0	4	12	-, -, AL
㉸	0	1	2	0	1	2	0	1	2	0	1	2	0	4	8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실시/ 보존 합계	0	2	5	0	2	5	0	2	5	0	2	5	0	8	20	

※ 반기 점검은 연 2회, 연차 점검은 연 1회, 기록 보존은 연 3건(국제컨벤션센터 2건) 실시

※ (반기 점검 항목) 저압전기설비, 예비발전설비 / (연차 점검 항목) 고압전기설비, 계전기 및 차단기 / (기록 보존 항목) 변압기 점검, 적외선 열화상 측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또한, 전북대학교 전기안전관리자는 [표 2]와 같이 2020. 1. 1.부터 2023. 12. 감사일 현재까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총 5종(수량 총 7개)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용 계측장비를 주기적(권장: 1년)으로 교정하지 않았다.

[표 2] 전기설비 안전점검용 계측장비 미교정 현황

연번	계측장비 명칭	구입 년도	구입 수량	계측장비 교정 여부
1	적외선열화상카메라	2022	1	미실시
2	절연저항측정기(1,000V)	1993	1	미실시
3	절연저항측정기(500V)	2020(수시구입)	3	미실시
4	접지저항측정기	2021	1	미실시
5	클램프미터	2021	1	미실시
합계	총 5종		총 7개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등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전기설비 안전점검용 계측기기를 교정하는 등 전기 설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①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점검 기록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AL 등 8명에게는 경고(3명)·주의(5명) 조치하고, (경고·주의)
- ② 전기설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보존하며, 전기설비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목 부

통보

제 목 물품 구매 시 자체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북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북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북대학교는 「AM」 2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량기반 큰 사람 키우기’를 대학 혁신의 방향으로 정하고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교육과정 개편, 단과 대학 자율혁신을 위한 사회수요 맞춤형 혁신, 데이터 기반의 대학교육 성과관리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등의 경우라고 되어 있다.

또한, 「트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수요물자²³⁾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대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일반경쟁을 통해 해당 물품 구매를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전북대학교(☞)는 2021. 12. 7. ***에 “ㄴ(688,985천 원)”을 요청하였으나, ***은 2021. 12. 7. 요청 마감 기간(매년 12. 1.까지) 경과로 전북대학교의 계약요청 건을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전북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예외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 반려를 이유로, [표]와 같이 자체 입찰을 통해 2022. 1. 4. ☐☐과 “ㄴ(660,000천 원)”을 체결하고, 2022. 3. 18. 최종 대금을 지출하였다.

[표] 계약 체결 진행 경과

구분	일자	내용	비고
1	2021. 12. 7.	*** 계약 요청 건 반려	
2	2021. 12. 8.	입찰 공고(안) 내부 결재	
3	2021. 12. 10.	자체 입찰 공고	
4	2021. 12. 22.	제안서 평가	
5	2021. 12. 30.	낙찰자 선정	
6	2022. 1. 4.	계약 체결	
7	2022. 1. 5.	지출 원인행위	
8	2022. 3. 18.	최종 대금 지출	

23) ***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북대학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21년 10월 AM 예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년 11월 17일에야 대학 내 예산 재배정이 최종 확정되어 계약 진행 절차가 순차적으로 늦어졌다고 답변하였다. 예산 재배정 이후 업무 소관 ㉸은 사업 제안서를 검토·작성하고 2021년 12월 7일에 ***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요청 마감 기간(매년 12월 1일까지) 경과로 ***으로부터 해당 계약 요청 건이 반려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2021년에 2주기 AM이 종료됨에 따라 차년도로 사업비 이월이 불가능하였고, ***에 2022년 1월 계약 요청 시 계약까지의 소요 기간(30일)과 물품 납품일(60일)을 감안하면 적시에 예산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전북대학교는 제안서 평가 시 외부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자체 입찰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북대학교는 대학 내 예산 재배정이 늦어지고 2주기 AM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불가능하여 자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 위탁기관인 ㉸㉸은 전북대에 3차례(2021. 3. 10., 2021. 7. 21., 2021. 10. 8.)에 걸쳐 총 85.21억 원의 AL 예산을 적시에 교부하였으므로, 대학 내 사업 예산의 재배정이 늦어져 자체 입찰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 반려 등을 이유로 자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트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AL 예산을 이용한 물품 구매 계획을 당해연도 10월에야 확정하고 11월에 예산을 재배정한 점, 예산 재배정 이후 업무 관련자들이 ***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점, 자체 입찰 방식으로 구매 업체를 선정할 점 등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북대학교 총장은

㉮, ㉮에서 「트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1. 전임교원 겸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은 2013. 4.부터 2023. 12. 감사일 현재까지 벤처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9. 3. 6.부터 2022. 10. 4.까지 3년 7개월 간 겸직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누락한 채 재직 <p>【「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전북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소속 구성원이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기 바람
2. 장학금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에게 장학금 4,382,380원을 지급 <p>【「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4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장학금 규정을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3. 장비사용료 세입 계좌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감사일 현재 대학 부설 ㉔ 명의 부외계좌 2개 방치 ※ ㉔ 명의 계약 잔액(2023. 12. 기준): 24,402원 <p>【「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부외계좌 2개를 해지하여 세입처리 하거나 관리하기 바람
4. 논문게재료 추가 수령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타교수가 실적으로 인정받은 연구결과물을 ㉔ 논문게재료 추가 신청·수령 - ▲회계 간접비 재원 논문게재료 638천 원(既반납) ※ 실적 제외한 성과연봉 재산정 결과: 등급 변동없음 <p>【「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동일 실적에 대해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바람
5. 연구비 구매 기자재 대학 기부채납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㉔ AN으로 구매한 기자재 10건(8,140천 원) 대학 재산 기부채납 미이행 <p>【「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는 대학 재산으로 기부채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6. 연구비 중앙구매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7명은 ▲을 통해 연구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총 7건 합계 46,427,600원의 연구물품을 직접 구매 <p>【「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4조, 「전북대학교 연구물품 구입 및 귀속 등에 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비 중앙구매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7. 2022년 AZ 사업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1일차 석식 소요 금액이 인당 3만 원을 초과하자 같은 식당에서 2일차 조식 소요금액도 인당 3만 원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을 이유로 2일차 조식 여유금액을 1일차 석식 초과금액으로 보전하여 충당하는 방식으로 식비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AZ사업 관리운영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국고지원금 사업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람
8. 사업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2022. 12. 29.) 후 감사일 현재까지(약 11개월) 구축된 플랫폼을 시범서비스로만 활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회계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AO'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기 바람
9. 교직원의 발명 사실 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4명은 총 17건의 발명을 하고도 ▲에 미신고 - AP 회의를 거쳐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결정 (2023. 12. 19.) <p style="text-align: center;">【「발명진흥법」 제12조, 「전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8조, 「전북대학교 지식재산권 운영 지침」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시정완료)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교직원의 지식재산권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